

# 코넥스시장 상장업무 가이드



# 목 차

## Contents

<b>I. 코넥스시장 개요</b>	05
<b>II.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및 절차</b>	11
1. 일반상장	13
2. 특례상장	27
<b>III. 상장심사 사전 준비사항</b>	47
1. 외부감사인 선임	48
2. 기업내부시스템 정비(정관 변경)	53
3.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및 전자증권 전환	55
<b>IV. 형식적 심사요건 가이드</b>	59
1. 공통요건	60
2. 일반상장	69
3. 특례상장	75



<b>V. 질적 심사요건 가이드</b>	95
1. 기업의 계속성	97
2. 경영 투명성	106
3. 상장 인프라	122
4. 투자자 보호	128
<b>VI. 코스닥 이전상장</b>	133
1. 이전상장 유형, 요건 및 혜택	134
2. 이전상장 현황	141
<b>VII. 기타사항</b>	143
1. 최초가격 결정	144
2. 지정자문인 제재	159
3.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164
4. 상장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166
<b>VIII. &lt;부록&gt;</b>	167



## 코넥스시장 상장업무 가이드

# I

## 코넥스시장 개요



# I . 코넥스시장 개요

## 1. 코넥스시장이란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및 해당 기업에 투자한 모험자본(VC)의 회수를 도와 「창업 → 성장 → 회수 및 재투자 → 중소벤처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소·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개설된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정규 증권 시장이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른 증권시장의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주권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2. 코넥스시장의 특성

### ① 상장대상의 특화(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이라는 시장개설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만 상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 가능합니다.

## 2 시장 진입요건 완화 및 다양화

공모방식으로 제한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코넥스시장은 공모, 사모, 직상장(자금조달을 미수반)이 모두 가능하도록 상장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성장성 있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돋고자 재무요건을 폐지(2015.06.12)하는 등 상장 요건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상장 외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을 위하여 특례상장(기술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진입 루트도 다양화하였습니다.

## 3 위험감수 능력별 투자자 진입 차등화

코넥스시장은 소규모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상장되는 시장이므로 다른 증권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위험감수능력과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과 달리 일반투자자의 경우 시장 참여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般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려면 3천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현금 및 대용증권)을 예치하거나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연간 3천만원 한도, 고위험선후투자자만 개설 가능)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예탁금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라도 일임계약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나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통한 간접 투자는 가능합니다.

※ 기본예탁금 면제대상(「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 시행세칙 제7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 (“전문엔젤투자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위탁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창업기획자

### 3. 코넥스시장 상장시 이점

#### 1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시 혜택 제공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 및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코스닥시장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코넥스시장을 경유하여 상장할 경우 코넥스시장에서 쌓아 온 상장기업으로서의 충분한 경험 및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충족을 전제로 일부 형식적·질적 요건 심사면제(또는 완화) 및 심사기간 단축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2 자금조달 기회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조달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모집·매출(공모)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코넥스시장 참여자는 공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합산 대상자(50인 이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투자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식등 지분증권을 사모 발행시 다른 증권시장 상장법인과 달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전매제한 조치(1년간 의무보유)를 하지 않아도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특례 】

구 분	코스피·코스닥	코넥스
공 모	증권신고서 제출	증권신고서 제출 <sup>주</sup> (합산대상자 제외범위 확대)
사 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전매제한 조치 필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전매제한 조치 불필요)

주) 청약권유대상자를 코넥스시장 참여자(전문투자자, VC,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일임형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예탁금 3천만원 이상 투자자, 창업기획자 등)로 제한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 3 상장유지부담 경감

코넥스시장은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 수시공시 항목 축소 등 상장법인의 공시부담을 크게 줄였고, 공시 제출 등 공시·신고 업무도 지정자문인이 대리하므로 다른 증권시장에 비해 기업이 직접 느끼는 상장유지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4 상장프리미엄의 선점 효과

기업규모나 내부통제장치 구축 등 질적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코스닥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만을 목표로 비상장기업인 상태로 계속 있는 것 보다는 먼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뒤 향후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더 이상 비상장기업이 아니게 됩니다. 즉, 상장 기업으로서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등 경영투명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사항이나 경영 현황, 주가 등이 공시·IR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내외에 전달되기 때문에 기업의 홍보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에 따른 대외신인도 및 기업이미지 제고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소속 임직원에게 기업실적 향상의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은 물론, 우수인력 유치도 보다 유리해질 것입니다.

# II

##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및 절차

### 1. 일반상장

### 2. 특례상장



## II.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및 절차

코넥스시장은 다른 증권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있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정자문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상장을 준비하고, 상장 이후에도 공시·IR 등 상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자문인을 통해 도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정자문인을 선임해 상장하는 경우를 “일반상장”이라 하며, 대부분의 기업은 일반 상장을 통해 코넥스시장에 진입합니다.

반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정수준 자금 조달에 성공한 크라우드 펀딩기업은 일반상장과 달리 지정자문인 선임 없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특례상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상장 또는 특례상장 등 상장 방법에 따라 신규상장을 위한 외형요건 및 상장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① 참고

### 코넥스시장 상장 관련 주요 법규

#### ① 법령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 ② 규정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1 일반상장

### 1. 신규상장 요건

코넥스시장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은 크게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으로 구분됩니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상장희망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감사의견 적정 등 상장심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외형요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 신청이 어렵습니다.

질적 심사요건은 형식적 심사요건의 충족이 전제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소는 질적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저해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위 업종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일반기업의 형식적 심사요건(외형 요건) 】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여부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지정자문인 선임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를 포함)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이 적정일 것
액면가액	액면주식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3조(신규상장심사 요건)』

## 2. 신규상장 소요기간

코스닥시장이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매매개시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코넥스시장(일반상장으로 직상장하는 경우)은 신규상장신청 후 상장승인 및 매매개시까지 약 15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상장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공모나 사모 방식을 통한 상장의 경우에는 직상장에 비해 상장 소요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기업의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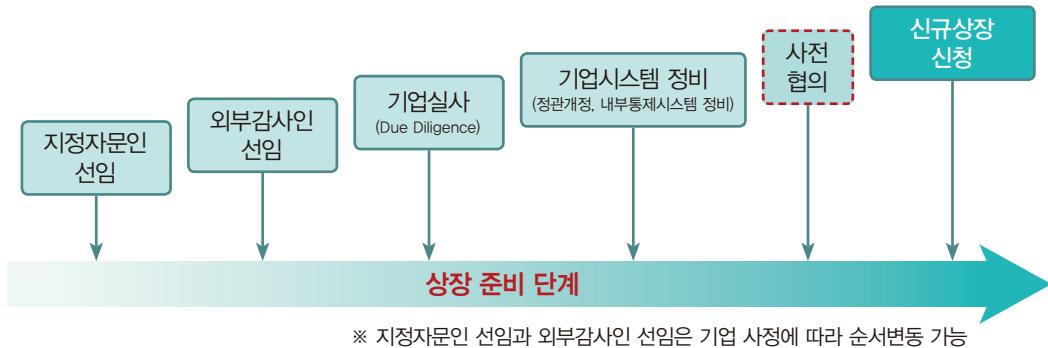
### 참고

#### 코넥스시장 상장시 자금조달 방법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을 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그러나 코넥스시장은 상장시 별도의 주식분산 요건이 없어 공모절차가 상장 승인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자금조달 필요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공모, 사모 또는 직상장 중 해당 기업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3. 상장 절차

#### 1 상장준비 단계



#### 1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코넥스시장에 일반상장하려면 상장신청 전 기업이 지정자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선임계약은 담당 기업에 대한 지정자문인의 책임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1사와 체결해야 하며, 복수의 지정자문인이 공동으로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자문인은 투자매매업 인가(인가업무단위 1-1-1)를 받은 자로서 거래소 회원인 자는 모두 지정자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지정자문인을 지정 또는 승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준비기업은 상장규정상의 지정자문인 자격을 갖춘 자 중 과거 상장실적,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자문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지정자문인은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심사 등 상장 준비 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상장 이후에도 공시·신고 대리, IR 지원, 유동성공급 업무, 자문제공 등 상장유지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 ②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합니다. 해당 감사의견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 상의 법정감사 절차에 따라 회계법인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기업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의무가 있으나,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규모 및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무를 모두 면제하고 있습니다.

## ③ 기업 실사(Due Diligence) 및 기업시스템 정비

기업이 지정자문인을 선임하면 해당 지정자문인은 상장적격성심사를 위해 기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실사(Due Diligence)하게 됩니다.

실사 과정을 통해 지정자문인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문제 등 기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에 문제가 없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주선인이 거래소가 정한 기업실사점검표(Due Diligence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기업을 실사하게 되나,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 제도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기업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상장적격성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실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지정자문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만약, 실사 과정에서 내부규정 등의 사전 정비가 필요하거나 해소되어야 하는 경영상 이슈 등이 있을 경우 지정자문인은 기업과 협의를 거쳐 해당 부분을 정비하게 됩니다.

기업시스템 정비 등 점검 및 실사가 완료되면, 지정자문인은 이를 토대로 상장적격성에 대한 의견 및 기업실사 내역 등을 포함한 상장적격성보고서와 기타 상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 주요 기업실사 점검 내용 】

구 분	내 용
기업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의 계속성(영업의 안정성 · 독립성, 매출처 편중성 등)</li> <li>• 재무 안정성(차입금 규모 등 재무구조, 우발채무 유무 등)</li> <li>• 소송 및 분쟁(경영권 등 관련 소송 · 분쟁 유무, 진행경과 등)</li> </ul>
경영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배구조(경영 독립성, 경영진 구성, 감사의 독립성 등)</li> <li>• 내부통제제도(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경영진 불법행위 등)</li> <li>• 회계처리 투명성(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회계시스템 적정성 등)</li> <li>•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거래의 적정성, 공시의 적정성 등)</li> </ul>
경영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안정성(최대주주 변경가능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여부 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상 주식회사 속성(주주 권리 · 의무, 기관 등 상법 준수 여부)</li> <li>• 기타 투자자 보호 등(상장 적합 업종 여부 등)</li> </ul>

### ④ 사전 협의

일반적으로 지정자문인은 상장신청 전에 거래소를 방문해 상장 일정 등 상장 절차 및 기업현황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정자문인의 사전협의 요청이 없더라도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예정법인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협의 절차는 상장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정자문인이 기업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 등이 발견되거나 향후 발생이 예상된다면, 해당 이슈에 대해 신규상장신청 전 한국거래소(코넥스상장심사팀)와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⑤ 신규상장신청

상장서류 작성 등 신규상장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지정자문인은 거래소와 협의한 상장일정에 맞춰 상장신청 전(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약 3일 전)에 거래소의 상장공시제출시스템 (<http://filing.krx.co.kr>)을 통해 상장신청 계획(청구계획 공문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신청 계획을 제출한 후 지정자문인은 상장희망일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전에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관련 서류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이후 공모(모집 · 매출) 또는 사모 등으로 인해 신규상장신청서 및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정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금 납입기일까지 신규상장신청서 및 상장적격성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해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상장신청시 서류제출은 거래소의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신규상장신청이 접수되면 거래소는 해당 사실을 보도자료 및 거래소 홈페이지(①거래소 <http://www.krx.co.kr> 또는 ②코넥스시장 <http://konex.krx.c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일반상장시 신규상장신청 제출서류(각 2부) 】

#### 제출서류명

① 신규상장신청서

② 상장적격성보고서

(※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반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재)

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최근 사업연도 결산 미확정시 다음 서류를 우선 제출 후 결산이 확정되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1)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

(2)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명

- ④ 합병 등의 영향이 반영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주주명부요약표
- ⑥ ① 정관
- ⑦ ⑧ 상장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⑨ ⑩ 발행등록사실확인서(신규상장신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또는 주권발행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우선 이에 갈음)
- ⑪ ⑫ (상장신청회사와 지정자문인 간)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 ⑬ ⑭ 주채권은행 의견서
- ⑮ ⑯ 이해관계자 투자현황확인서
- ⑰ ⑱ 명의개서대행계약서
- ⑲ ⑳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사본
- ⑳ ㉑ 코넥스 상장계약서
- ㉒ ㉓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㉔ ㉕ (상장신청회사의) 의무이행확인서
- ㉖ ㉗ (외부감사인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 ㉘ ㉙ 상장종목 개요
- ㉚ ㉛ 평가가격 산출내역
- ㉜ ㉝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 ㉞ ㉟ 공시책임자 직무수행 승낙확인서
- ㉟ ㉢ 상장수수료 영수증 (※ '20.6.30까지 면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신규상장신청), 시행세칙 제12조(신규상장신청 서류 등)》

##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임의감사를 수감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각 2부) 】

제출서류명
④ 임의감사인이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⑤ 해당 임의감사인과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⑥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 감사보고서
⑦ 해당 법정감사인과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⑧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증빙자료
⑨ 상기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 소급 감사보고서
⑩ 상기 법정감사인과 체결한 소급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서 사본
⑪ 상기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소급감사 확인서

※ 임의감사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등이 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감사  
 ※ 상기 법정감사인은 금융위(금감원)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함

## 【 신규상장신청 후 공모 · 사모시 추가 제출서류(각 2부) 】

제출서류명	비고	제출기한
④ 신규상장신청서	수정 제출	주금납입일
⑤ 상장적격성보고서		
⑥ 상장증목개요		등기완료 후 즉시 제출
⑦ 발행등록사실확인서		
⑧ 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 · 배정명세서 요약표	추가 제출	등기완료 후 즉시 제출
⑨ 증권 인수, 공모 · 사모 증개 등 증권 발행관련 계약서 사본		
⑩ 주금납입증명서		
⑪ 법인등기부등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신규상장신청 서류 등)》

## 참고

## 상장신청서류 준비시 유의 사항

## ① 개인정보 기재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부과 또는 대표이사(CEO) 등에 대한 법적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으므로, 상장신청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거주지 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기재도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 ② 합병시 추가서류 제출

- 과거에는 결산기말 전 3개월 이내에 합병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후 상장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합병시기의 제한 없이 신규상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규상장신청을 할 경우 합병 등의 영향이 반영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합병 등을 말함

- i. 다른 법인과의 합병
- ii.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제2항 각 호

- 양수 ·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양도
- 양수 ·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양도
-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양수 · 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 · 제품 · 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 · 양도\*는 제외)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 · 양도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iii.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 iv. 분할 또는 분할합병

## ③ 공시서류 간 내용 일치

- 코넥스시장에서는 신규상장 승인 후 상장적격성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자문인과 상장신청기업은 상장적격성보고서 기재내용과 그 외에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상장심사 단계

### ⑥ 상장심사

기업 및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신규상장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거래소는 해당 상장신청법인의 주식이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익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 상장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뿐만 아니라 신청법인에 대한 현장답사, 대표이사 면담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 서면심사

심사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상장 신청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신청기업의 상장적합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자문인이나 기업에 추가로 질의하거나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정자문인 및 기업은 성실히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답사

거래소는 심사기간 중 서면심사 외에 상장신청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법인의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고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의·청취합니다. 현장답사는 일반적으로 심사담당자를 포함하여 거래소 직원 2인이 방문해 실시하게 되며, 답사 기간은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신청법인의 생산 시설이 단순하거나 영위하는 사업내용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등 현장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표이사 면담

심사기간 중 상장신청법인 대표이사와 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 담당임원 간 한 차례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면담 과정은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 상장 배경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코넥스시장에 대한 상장신청법인의 견의 또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 3 상장 승인 및 매매개시 단계

### 7 상장 승인

일반상장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기술특례상장과 달리 거래소 내부 심사만으로 상장승인 여부가 확정되며,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심사담당자는 해당 결과를 상장신청법인, 지정자문인 및 금융감독원에 문서로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결과는 상장희망일을 기준으로 약 3영업일 전에 통보되나, 상장신청서류에 정정 또는 보완이 있거나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심사결과 통지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상장신청법인 및 지정자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상장이 승인되면 상장신청법인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해당 내용을 기업, 지정자문인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한 후 거래소 공시매체(<http://kind.krx.co.kr>)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합니다. 이후 해당 지정자문인은 상장적격성보고서를 거래소 공시매체에 공시합니다.

## ⑧ 매매거래 개시

상장이 승인되면 상장 당일 거래소에서 상장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상장기념식은 해당 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함을 축하함과 동시에 상장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음을 공표하는 자리로서, 신규상장기업, 지정자문인, 유관기관(코넥스협회, 한국IR협의회), 거래소 상장관련 임직원 및 언론 등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참고로 상장기념식이 진행되는 도중 정규시장 매매거래가 개시(09시)되면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최초 가격이 결정됩니다. 상장기념식 일정이 모두 끝나면 신규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공정거래 및 공시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 ◆ (상장수수료)

신규상장법인은 상장승인 후 상장 직전일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장수수료를 거래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및 기업부담을 고려해 '20.6.30까지 상장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이의신청, 공모 · 사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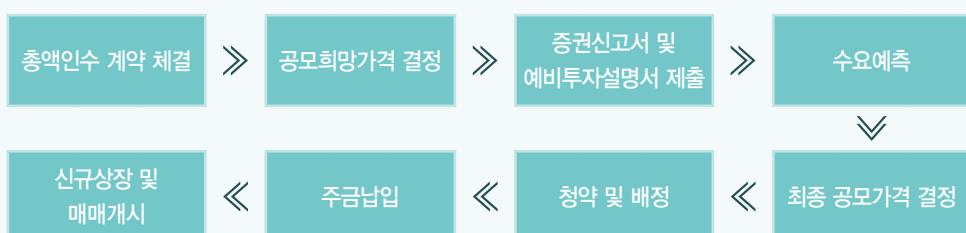
#### ① 이의신청

- **(개요)** 상장신청법인이 거래소의 신규상장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이해관계자(상장신청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정자문인)는 거래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기업의 대표자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문절차가 종료되면 거래소는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제출서류)**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지정자문인의 소견서,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 **(근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7조, 시행세칙 제16조

## ② 공모 · 사모

-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상장요건에 분산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필요할 경우 다른 증권시장과 같이 상장 전 공모를 통해 스스로 분산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모 절차는 다른 시장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신규상장 및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
-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은 “상장예비심사청구 → 심사승인 → 공모 → 상장신청 → 상장(매매거래개시)”의 단계를 거쳐 신규상장되므로 공모 이후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가 있으나, 코넥스시장은 상장예비심사의 개념이 없으므로 공모 완료 후 별도의 상장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 공모 절차 】



- 물론,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라 상장 전 공모 대신,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 권유를 행하는 사모 증자도 가능합니다. 사모의 경우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공모보다 소요기간이 단축되며, 코넥스시장의 경우 공모여부 판단 기준인 청약권유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 대상 범위를 확대해 줌으로써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 사모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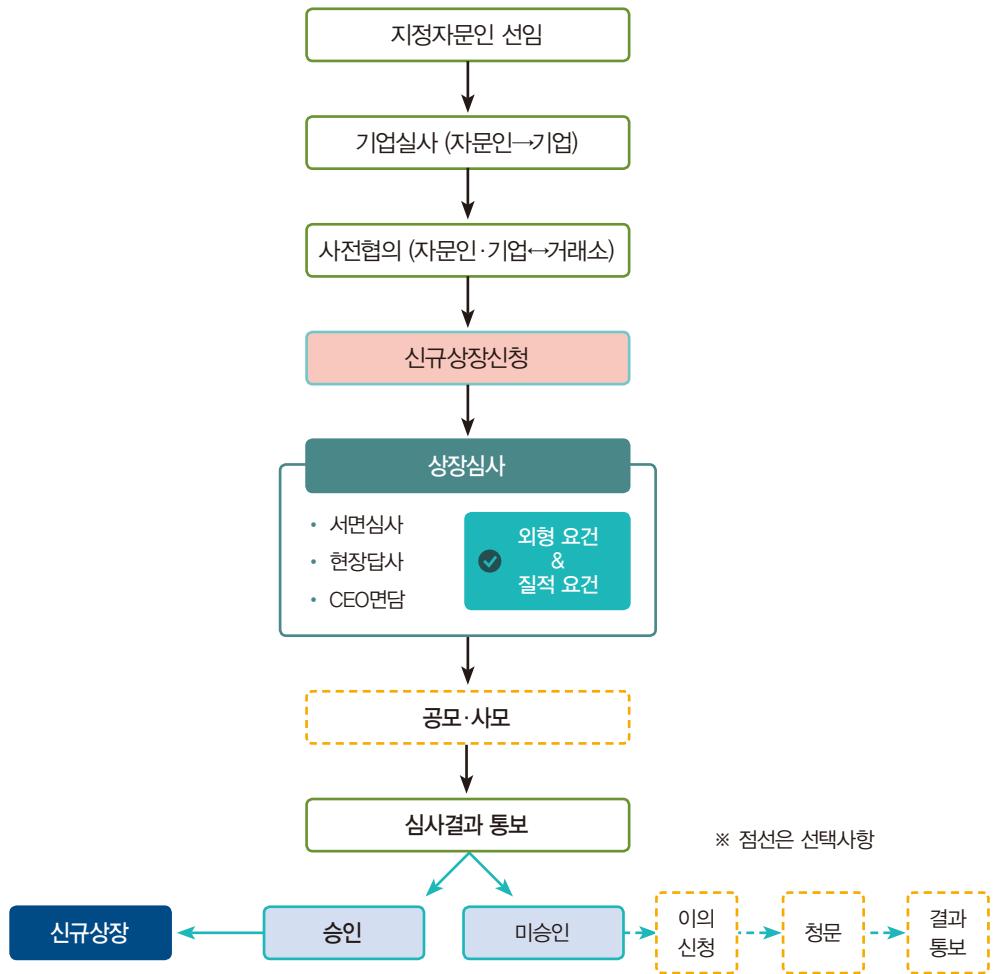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특례

구분	코스피 · 코스닥	코넥스
공모	증권신고서 제출	증권신고서 제출 <sup>(주)</sup> (합산대상자 제외범위 확대)
사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전매제한 조치 필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전매제한 조치 불필요)

주) 청약권유대상자를 코넥스시장 참여자(전문투자자, VC,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일임형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예탁금 3천만원 이상 투자자, 창업기획자 등)로 제한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 【 일반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 절차 】



## 2 특례상장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상장하는 일반상장이 기본이나 이와 별도로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두 종류의 특례상장 제도(기술특례, 크라우드펀딩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소규모 초기·창업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부담을 줄여 자본시장 조기진입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BB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고, 지정기관투자자(VC 등)의 상장 동의를 받은 기업에게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2015년 7월 6일에 도입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은 일정 요건(펀딩규모, 참여투자자수) 이상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 기술특례상장

#### 1 신규상장 요건

기술특례상장의 경우도 일반상장과 동일하게 신규상장 요건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으로 구분되며,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신규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일반상장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특례상장의 특성에 맞는 일부 요건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지정기관투자자(VC) 대상 투자유치 및 상장동의 요건, 공인된 기술력 입증 요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특례상장의 취지에 따라 일반상장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는 면제됩니다.

질적 심사요건은 일반상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검증 절차가 없는 만큼,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기술성, 공시능력 및 경영 투명성을 토대로 공익과 투자자보호 여부를 전반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 【 기술특례상장 형식적 심사요건(외형 요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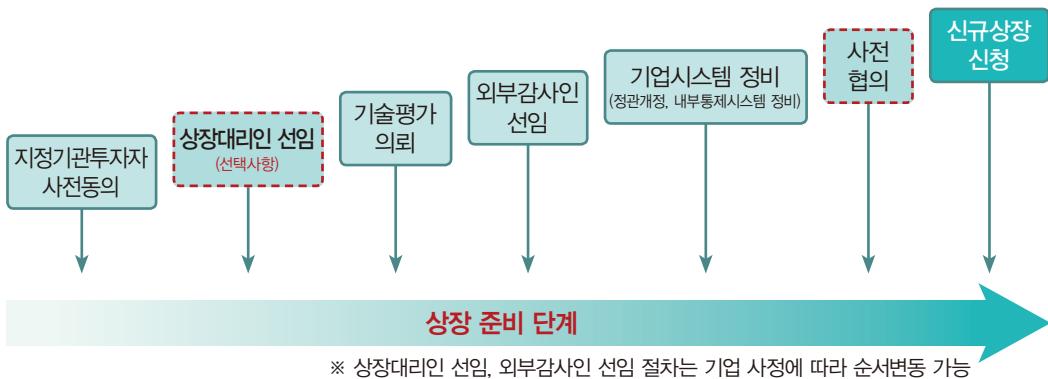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여부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를 포함)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이 적정일 것
액면가액	액면주식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기술력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BB 이상 기술평가등급을 받을 것
투자유치 및 상장동의	거래소가 지정하는 지정기관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와 합산하여 신청기업의 지분을 상장신청일의 6개월 전부터 10% 이상 소유 또는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고, 해당 지정기관투자자가 상장 및 의무보유에 동의할 것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3조의2(신규상장의 특례)》

## 2 신규상장 소요기간

기술특례상장은 일반상장과 달리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추가되며, 필요시 기술성 심사 등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신청 후 상장까지 약 15영업일이 걸리는 일반상장과 달리, 기술특례상장은 상장신청 후 상장이 되기까지 약 4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상장 전 공모 또는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있거나, 심사 중 심사기업에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 상장 절차



#### STEP 1 상장 준비

기술특례상장의 경우도 상장 준비 절차는 일반상장과 유사합니다. 즉, 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 기업시스템 정비 → 사전협의 → 상장신청 등 대부분의 경우 일반상장과 동일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상장이 지정자문인을 선임해 해당 지정자문인의 도움을 받아 상기 단계를 준비하는 것과 달리, 기술특례상장은 신청기업이 관련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의 판단 하에 필요시 상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장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심사요건으로 요구되는 만큼, 상장신청 전에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 충족 확인 및 상장 동의도 확보해야 합니다.

#### ① 지정기관투자자 상장동의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신청법인이 거래소가 지정한 지정기관투자자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상장 이후 일정기간 해당 지정기관투자자의 지분 매각이 제한(의무보유)되므로 상장 신청에 앞서 해당 지정기관투자자의 상장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정기관투자자가 코넥스시장의 상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례상장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상장 준비의 첫 단계로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규모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고, 해당 지정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상장대리인 선임

원칙적으로 특례상장은 지정자문인 선임 요건이 면제되므로 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상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기업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초기·창업 기업의 경우 자력으로 상장신청 준비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코넥스시장에서는 자력으로 상장 준비 및 상장 신청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상장대리인 선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장을 준비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상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해당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장대리인은 상장신청 기업을 대신하여 상장심사청구서 작성, 관련서류 준비, 내부시스템 정비 지원 등 상장 단계까지 지정자문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③ 기술평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넥스시장에 진입하려면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기관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신용평가 기관(TCB)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 중에서 1사를 기업이 선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술평가서는 상장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당 평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것만 유효하므로 기업은 상장신청 일정을 고려하여 기술평가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평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사유로 다시 기술평가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상장 시기가 가시화된 이후에 기술평가를 신청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④ 사전협의

일반상장과 동일하게 기술특례상장의 경우에도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신규상장신청 전 상장신청예정법인에 상장절차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상장신청법인은 일반상장과 달리 지정자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장과 관련된 애로사항, 기업 경영 및 영업 관련 이슈 등을 사전협의 과정에서 거래소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 심사과정에서 중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선 거래소와의 사전협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⑤ 신규상장신청

상장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기업은 거래소와 협의된 상장일정에 맞춰 상장신청 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일반상장과 같이 거래소의 상장공시제출 시스템(<http://filing.krx.co.kr>)을 통하여 되고, 신청계획이 접수 완료되면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장희망일로부터 45영업일 전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보도자료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은 지정자문인이 없고, 기술평가 관련 증빙도 해야 하므로 상장신청 제출 서류에 있어 일반상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개인정보 기재금지 등 신청서류 준비시 유의 해야 할 사항은 일반상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 기술특례상장시 신규상장신청 제출서류(각 2부) 】

제출서류명
② 신규상장신청서
⑤ 신규상장심사청구서 (※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반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재)
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최근 사업연도 결산 미확정시 다음 서류를 우선 제출 후 결산이 확정되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1)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 (2)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
⑦ 합병 등의 영향이 반영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⑧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주주명부요약표
⑨ 정관
⑩ 상장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⑪ 발행등록사실확인서(신규상장신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또는 주권발행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우선 이에 갈음)
⑫ 주채권은행 의견서
⑬ 이해관계자 투자현황확인서
⑭ 명의개서대행계약서
⑮ 코넥스 상장계약서
⑯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⑰ 자정기관투자자 상장동의서
⑱ 기술평가등급 기재서류
⑲ 기술평가기관의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⑳ 자정기관투자자의 주식등의 의무보유확인서
㉑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지정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규상장신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주식등의 보관증명서로 우선 이에 갈음)
㉒ (상장신청회사의) 의무이행확인서
㉓ (외부감사인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㉔ 상장종목 개요

## 제출서류명

- ⑤ 평가가격 산출내역
- ⑥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 ⑦ 공시책임자 직무수행 승낙확인서
- ⑧ 상장수수료 영수증 (※ '20.6.30까지 면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3조의2, 시행세칙 제13조의3》

##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임의감사를 수감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각 2부) 】

## 제출서류명

- ⑨ 임의감사인이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⑩ 해당 임의감사인과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 ⑪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 감사보고서
- ⑫ 해당 법정감사인과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 ⑬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증빙자료
- ⑭ 상기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 소급 감사보고서
- ⑮ 상기 법정감사인과 체결한 소급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서 사본
- ⑯ 상기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소급감사 확인서

\* 임의감사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성이 아닌 회사가 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등이 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감사

※ 상기 법정감사인은 금융위(금감원)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함

## 【 신규상장신청 후 공모 · 사모시 추가 제출서류(각 2부) 】

제출서류명	비고	제출기한
① 신규상장신청서	수정 제출	주금납입일
② 신규상장심사청구서		
③ 상장종목개요		
④ 발행등록사실확인서		
⑤ 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 · 배정명세서 요약표	추가 제출	등기완료 후 즉시 제출
⑥ 증권 인수, 공모 · 사모 증개 등 증권 발행관련 계약서 사본		
⑦ 주금납입증명서		
⑧ 법인등기부등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

## STEP 2 상장심사

### ⑥ 상장심사

기업이 신규상장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제출 서류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주식이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상장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뿐만 아니라 신청법인에 대한 현장답사, 대표이사 면담 등도 병행하게 됩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인 만큼, 공익과 투자자 보호 적합성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기술력에 대한 검증도 실시합니다.

#### 서면심사

지정자문인의 사전 상장적격성 검증이 없었던 만큼 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면밀히 신청기업의 상장적합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히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장신청기업의 재무정보, 사업현황 등 핵심내용이 기재된 신규상장심사청구서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공익과 투자자 보호 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기술성, 공시능력 및 경영투명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물론 일반상장의 경우와 같이 서면심사 외에 신청법인에 대한 현장답사, 대표이사 면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 전문가회의

기술특례상장인 만큼, 거래소는 신청기업의 기술성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해당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은 특례상장신청법인이 속한 산업 분석과 해당 법인의 기술성 및 시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 STEP 3 상장승인 및 매매개시

#### 7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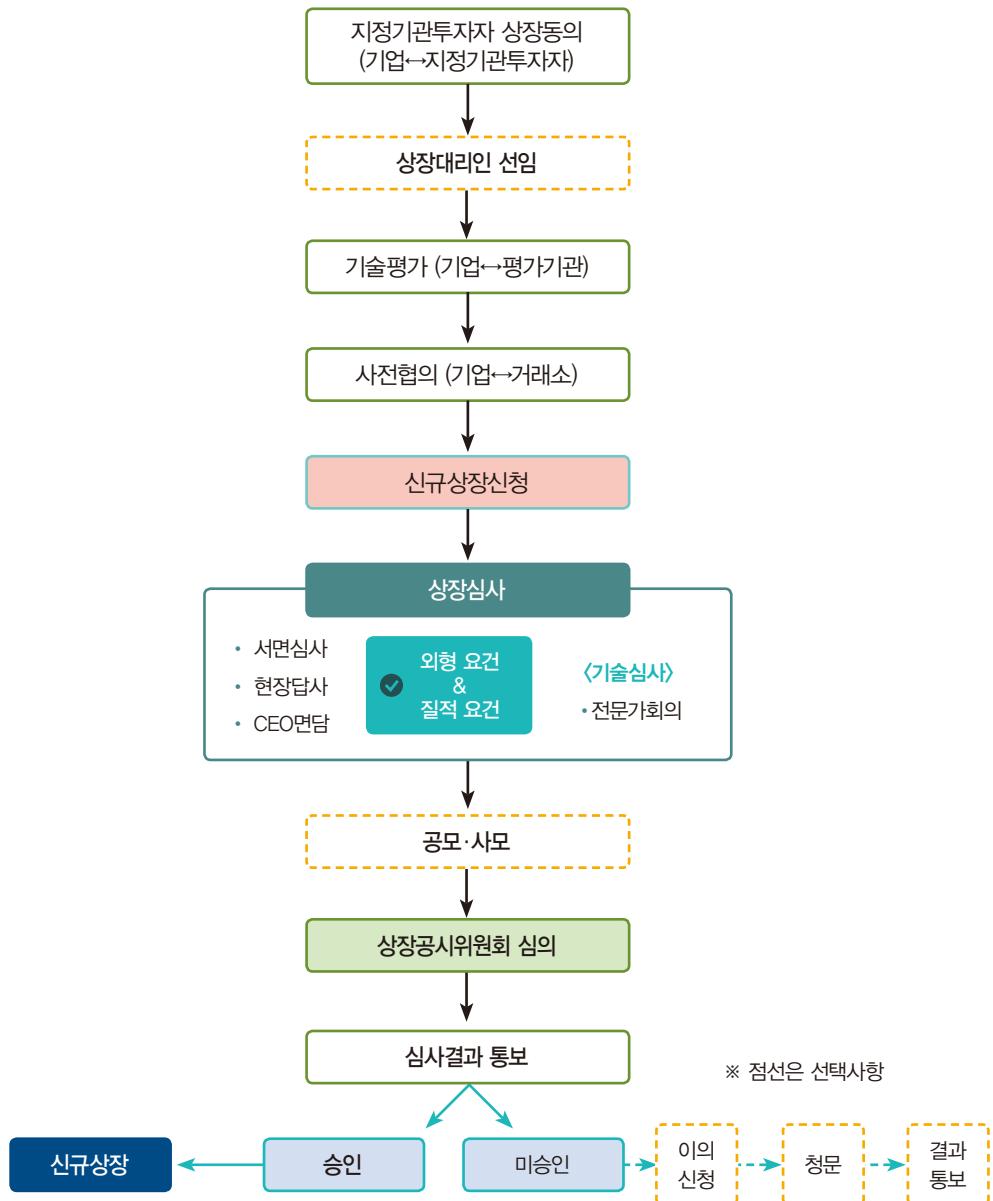
일반상장은 상장신청 결과가 심사 이후 거래소 내부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반면, 기술특례 상장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친으로써 특례상장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례상장의 상장 소요기간이 일반상장보다 30일이 더 늘어난 45일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 8 상장 승인 및 매매거래 개시

위원회 심의 후 최종 상장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거래소는 해당 결과를 상장신청법인에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상장이 승인되었다면 거래소는 상장신청법인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업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자체 없이 통지한 후 거래소 공시매체 (<http://kind.krx.co.kr>)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게 됩니다.

이후 상장기념식 개최, 매매거래 개시 및 불공정거래 · 공시교육 등 후속 절차와 상장 불승인시의 이의신청 절차, 상장 전 공모 · 사모 등의 관련 절차는 일반상장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 절차 】



## 2.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 1 신규상장 요건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도 일반상장 및 기술특례상장과 동일하게 신규상장 요건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신규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형식적 심사요건은 기술특례상장과 마찬가지로 일반상장의 형식적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요건이 추가됩니다. 물론 기술특례상장과 마찬가지로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는 면제됩니다.

질적 심사요건 또한 일반상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기술특례상장과 마찬가지로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검증 절차가 없고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신청 기업이 주로 신생 창업기업인 만큼,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공시업무 능력, 경영 투명성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게 됩니다.

#### 【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형식적 심사요건(외형 요건) 】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여부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를 포함)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이 적정일 것
액면가액	액면주식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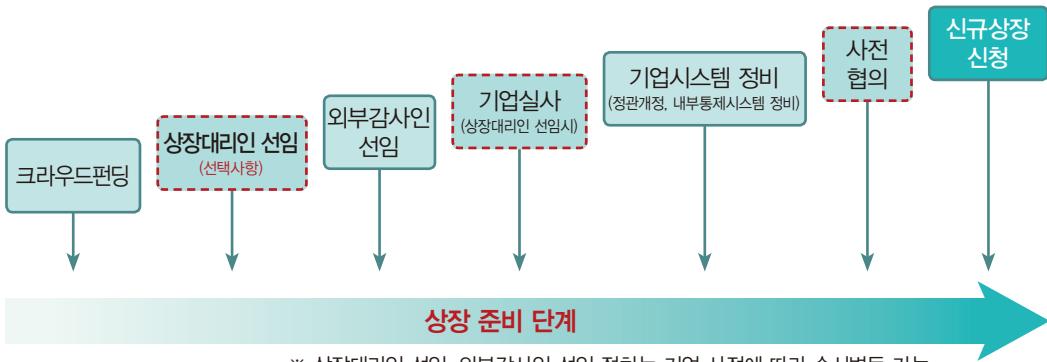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크라우드 펀딩	대상	상장신청일 현재 크라우드펀딩(사모 증개 제외)으로 발행한 보통주식(상장신청 전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종류주식 포함)													
	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KSM<sup>※1)</sup>등록 상장추천<sup>※2)</sup></th> <th>일반기업</th> <th>KSM등록기업</th> </tr> </thead> <tbody> <tr> <td>미추천</td><td>3억원 이상</td><td>1.5억원 이상</td><td></td></tr> <tr> <td>추천</td><td>1억원 이상</td><td>0.75억원 이상</td><td></td></tr> </tbody> </table>	KSM <sup>※1)</sup> 등록 상장추천 <sup>※2)</sup>		일반기업	KSM등록기업	미추천	3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추천	1억원 이상	0.75억원 이상		주1) KRX Startup Market : 거래소의 스타트업기업 전용 장외시장('16.11.14 개설) 주2) 상장추천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 여부를 의미
KSM <sup>※1)</sup> 등록 상장추천 <sup>※2)</sup>		일반기업	KSM등록기업												
미추천	3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추천	1억원 이상	0.75억원 이상													
투자자수	50인 이상 (KSM등록기업은 20인 이상) * 투자자수 산정시 소액투자자(투자금액 50만원 미만) 및 연고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등 일부 투자는 제외되며, 투자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2항)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3조의2(신규상장의 특례)》

## 2 신규상장 소요기간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은 기술특례상장과 달리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성심사,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추가 절차가 없어 일반상장과 같이 상장신청 후 상장일까지 약 15영업일이 소요 됩니다. 다만, 상장 전 공모 또는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있거나, 심사 중 심사기업에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 상장 절차



#### STEP 1 상장 준비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도 상장 준비 절차는 일반상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 기업시스템 정비 → 사전협의 → 상장신청 등의 기본 준비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1 상장대리인 선임

기술특례상장과 마찬가지로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도 필요할 경우 상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장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장대리인의 역할은 기술특례상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장대리인의 자격이 확대(투자매매업자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증개업자도 가능)되는 만큼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준비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상장대리인 자격 요건 】

자격요건	구분	
	기술특례	크라우드펀딩특례
<b>투자매매업자</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인가업무단위 중 1-1-1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	○
<b>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

## ② 사전협의

특례상장은 일반상장과 달리 지정자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장준비 과정에서 거래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규모, 투자자 수 등 특례상장을 위한 외형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거래소와 함께 꼼꼼히 점검해서 상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상장대리인을 선임해 상장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소와 해당 기업(상장대리인 포함)간 사전협의는 필요합니다.

## ③ 신규상장신청

상장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기업은 거래소와 협의된 상장일정에 맞춰 상장신청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은 거래소의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장희망일로부터 15영업일 전에 상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보도자료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시 신규상장신청 제출서류(각 2부) 】

### 제출서류명

- ⑧ 신규상장신청서
- ⑨ 신규상장심사청구서
 

(※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반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재)
- ⑩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최근 사업연도 결산 미획정시 다음 서류를 우선 제출 후 결산이 확정되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 (1)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
  - (2)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
- ⑪ 합병 등의 영향이 반영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⑫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주주명부요약표
- ⑬ 정관
- ⑭ 상장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⑮ 발행등록사실확인서(신규상장신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또는 주권발행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우선 이에 갈음)
- ⑯ 주채권은행 의견서
- ⑰ 이해관계자 투자현황확인서
- ⑱ 명의개서대행계약서
- ⑲ 코넥스 상장계약서
- ⑳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㉑ 크라우드펀딩금액 및 참여 투자자 수 확인 서류(중앙기록관리기관 발행 서류)
- ㉒ 크라우드펀딩 대상 증권이 종류주식인 경우 상장신청 전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㉓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KSM 등록 후 6개월 경과 확인서 및 교육과정 (거래소가 개설한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확인서

### 제출서류명

- ④ (상장추천기관으로부터 코넥스시장 상장추천을 받은 경우) 크라우드펀딩기업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서
- ⑤ (상장신청회사의) 의무이행확인서
- ⑥ (외부감사인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 ⑦ 상장종목 개요
- ⑧ 평가가격 산출내역
- ⑨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 ⑩ 공시책임자 직무수행 승낙확인서
- ⑪ 상장수수료 영수증 (※ '20.6.30까지 면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3조의2, 시행세칙 제13조의6》

###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임의감사를 수감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각 2부)】

#### 제출서류명

- ④ 임의감사인이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⑤ 해당 임의감사인과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 ⑥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 감사보고서
- ⑦ 해당 법정감사인과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 ⑧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증빙자료
- ⑨ 상기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 소급 감사보고서
- ⑩ 상기 법정감사인과 체결한 소급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서 사본
- ⑪ 상기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소급감사 확인서

※ 임의감사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등이 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감사  
※ 상기 법정감사인은 금융위(금감원)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함

## 【 신규상장신청 후 공모 · 사모시 추가 제출서류(각 2부) 】

제출서류명	비고	제출기한
④ 신규상장신청서		
⑥ 신규상장심사청구서	수정 제출	
⑦ 상장종목개요		
⑧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주금납입일
⑨ 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 · 배정명세서 요약표		
⑩ 증권 인수, 공모 · 사모 중개 등 증권 발행관련 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⑪ 주금납입증명서		
⑫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완료 후 즉시 제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

## 【 신규상장신청 후 크라우드펀딩시 추가 제출서류(각 2부) 】

제출서류명	비고	제출기한
④ 신규상장신청서		
⑥ 신규상장심사청구서	수정 제출	
⑦ 상장종목개요		
⑧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주금납입일
⑨ 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 · 배정명세서 요약표		
⑩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관련 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⑪ 주금납입증명서		
⑫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완료 후 즉시 제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6

## STEP 2 상장심사

### ④ 상장심사

기업이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상장신청법인의 주식이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상장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뿐만 아니라 신청법인에 대한 현장답사, 대표이사 면담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 서면심사

심사담당자는 지정자문인에 의한 상장적격성 검증이 없었던 만큼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신청 기업의 상장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특히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장신청기업의 재무정보, 사업현황 등 핵심내용이 기재된 신규상장심사청구서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공의 및 투자자 보호 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공시능력 및 경영투명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 추천기관 면담

상장신청기업이 추천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창조경제혁신센터) 1사로부터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을 받은 경우 거래소는 해당 추천 기관 담당자와 추천 이유, 기업 현황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상장추천을 받은 만큼, 추천기관의 판단 근거와 기업관련 정보 등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실제 상장심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사담당자는 서면심사, 현장답사, 대표이사 면담 및 추천기관 면담 등을 거쳐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 신청법인에 대한 상장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 STEP 3 상장승인 및 매매개시

#### ⑤ 상장 승인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은 일반상장과 같이 거래소 내부 심사만으로 상장승인 여부가 확정되며,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심사담당자는 해당 결과를 상장신청법인, 추천기관(추천을 통해 상장 신청한 기업에 한함) 및 금융감독원에 문서로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결과는 상장희망일을 기준으로 약 3영업일 전에 통보되나, 상장신청서류에 정정 또는 보완이 있거나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심사결과 통지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상장신청법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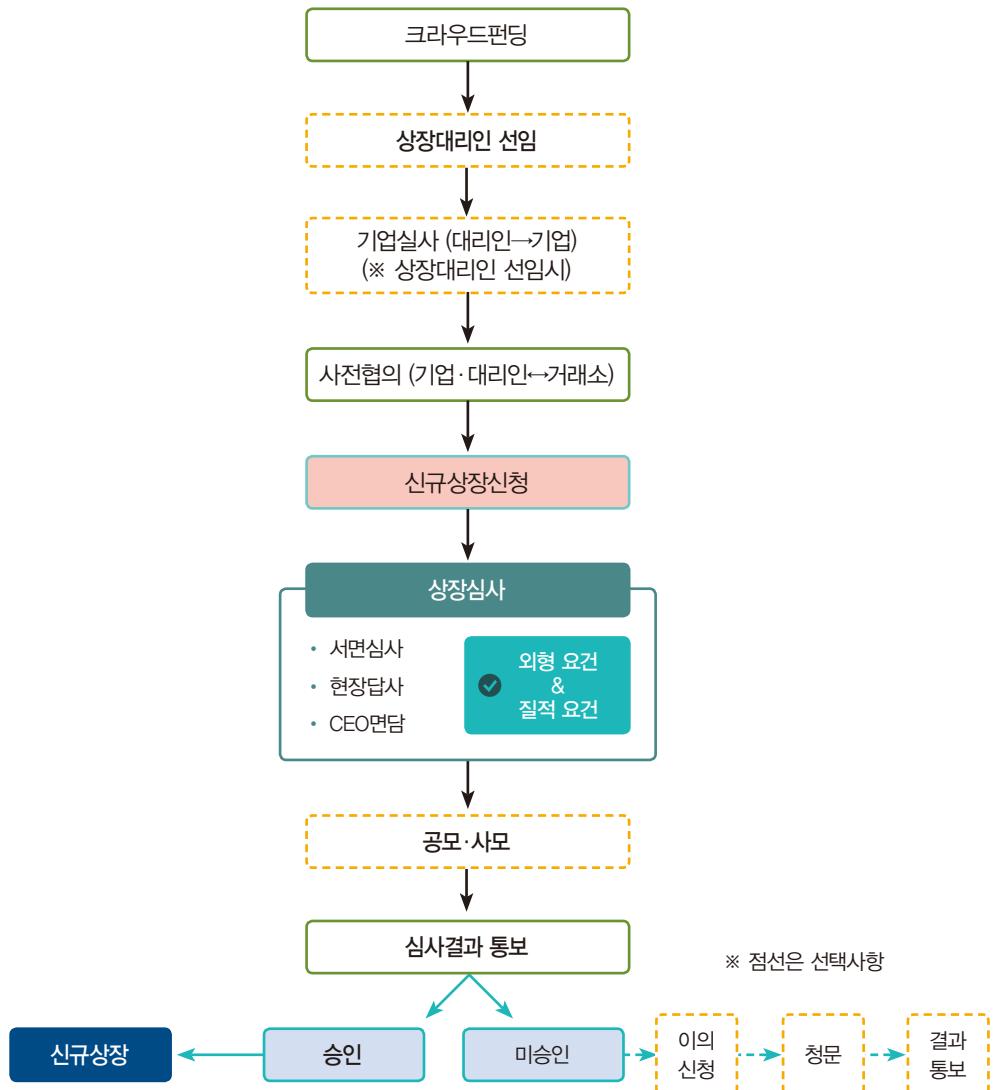
거래소는 상장이 승인되면 상장신청법인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해당 내용을 기업, 추천기관(추천을 통해 상장 신청한 기업에 한함)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한 후 거래소 공시매체(<http://kind.krx.co.kr>)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합니다.

#### ⑥ 매매거래 개시 등

상장이 승인되면 상장 당일 매매거래 개시 전 거래소에서 상장기념식이 개최되고, 이후 매매거래 개시 및 불공정거래 · 공시교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밖에 상장 불승인시의 이의신청 절차와 상장 전 공모 · 사모 등의 관련 절차는 일반상장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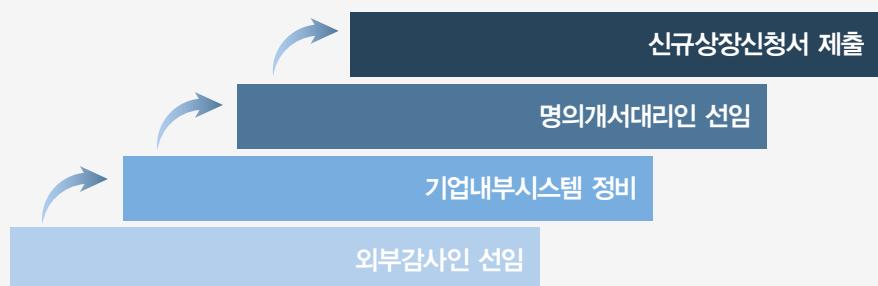
# III

## 상장심사 사전 준비사항

1. 외부감사인 선임
2. 기업내부시스템 정비(정관 변경)
3.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및  
전자증권 전환



### III. 상장심사 사전 준비사항



코넥스시장은 상장요건이 타 시장에 비해 까다롭지 않고, 상장 전 공모도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장신청 사전 준비사항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외부감사인 선임, 상장 기업으로서 필요한 기업내부시스템(정관 등) 정비 및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특례상장 예정기업은 별도의 상장요건에 맞춰 상장신청 전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력 검증, 크라우드 펀딩 등 관련 사항도 준비해야 합니다.

#### 1. 외부감사인 선임

##### 1.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법정감사)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려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이 경우 외부감사는 감사인 선임 · 계약이 관련 외부감사법에 따라 금융

감독원에 보고된 '법정감사'이어야 합니다. 즉,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등이 없이 필요에 의해 감사를 받는 '임의감사'로는 코넥스시장 신규 상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미처 '법정감사'를 수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상장 신청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19년 4월 관련 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즉, 최근 사업연도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임의감사'를 수감한 기업은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연도의 상반기 법정감사와 해당 법정감사인에 의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소급감사를 실시한 경우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 상장희망기업은 외부감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 절차를 늦어도 신규상장 희망연도의 전년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 참고

### 외부감사인 선임 대상 및 절차 등 관련 제도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등 외부감사인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며, 관련 법규 · 제도 및 선임 절차 등 실무 자료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털(<http://acct.fss.or.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① 외부감사 대상회사(외부감사법 제4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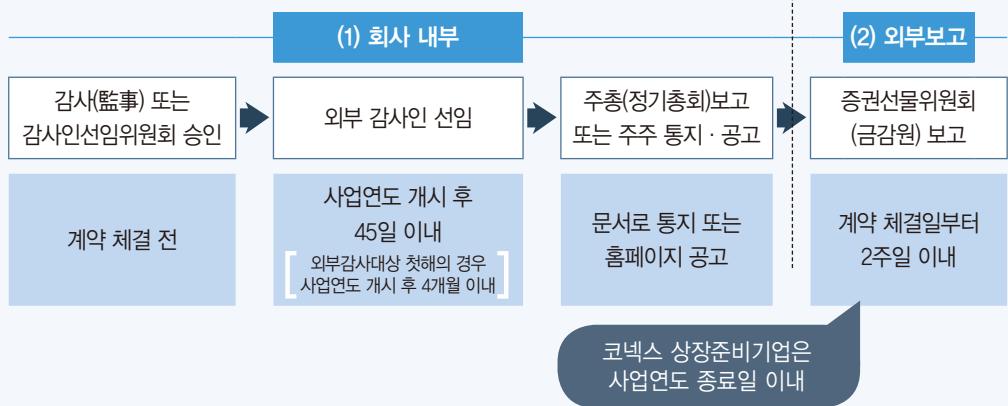
- ▶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우회상장, 스팩합병상장 추진 회사 포함)
-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주식회사
  - 자산총액 요건 : 직전 사업연도 말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요건 : 직전 사업연도 말 70억원 이상
  - 매출액 요건 : 직전 사업연도 1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수 요건 : 직전 사업연도 말 100명 이상(일용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는 종업원 수 산정 시 제외)

- ※ 다만, 비상장기업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포함),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 설립등기한 회사(분할·합병으로 설립 등기한 경우로서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비상장기업인 지방공기업,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인 회사(회생절차 개시결정된 회사는 제외), 해산·清算·파업·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연도 내 소멸 예정인 회사, 금융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휴업·폐업 신고 회사, 증권발행·자금차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의 요건(마목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연락두절 등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 등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 과거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주식회사로 한정되었으나, 최근 외부감사법 개정('18.10.31 시행)에 따라 회사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포함됨

## ②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외부감사법 제10조 · 제12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8조 등)

- ▶ (선임절차) 감사의 승인 등 회사 내부의 선임 절차가 완료되면, 증선위(금감원)에 해당 선임 사실을 보고
  - ▶ (선임기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선임할 수 있음)
  - ▶ (보고시한)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일 이내에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 ※ 코넥스시장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작아 상장추진 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선임·보고 시한을 탄력 적용

###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



### ③ 외부감사인 구분(외부감사법 제2조 · 제9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조제1항)

- ▶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만 가능
  - i.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ii. 감사반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 감사반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감사반의 등록) 참고  
 ※ 코넥스상장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 상장신청을 위한 외부감사는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만 인정(감사반에 의한 외부감사는 불인정)되며, 상장 후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 모든 상장 법인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주권상장법인 감사인")만 외부감사를 할 수 있음

### ④ 지정감사인 의무 면제(외부감사법 제11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 · 제15조)

- ▶ (지정감사)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예정법인 또는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법인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는 증선위가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 ▶ (의무면제) 상장예정법인 또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며,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은 기업 규모 · 부담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코넥스기업에 대한 지정감사인 의무 면제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b>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b> <p>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 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p> <p>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p>	<b>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b> <p>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p> <p>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는 제외한다.</p> <p>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p>
	<b>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b> <p>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p>

### 〈 지정감사인 의무 대상 예시 〉

-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인 선임 절차에 위반이 있거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예. 중요한 절차 수행을 제한하는 감사계약 요구, 회사 임원 · 회계담당자 · 주주 · 채권자가 감사의견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 감사보수를 현저히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회사
-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 또는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요구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0 미만, 영업현금흐름 0 미만, 또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재무기준 요건(동종업종 부채비율 1.5배 초과,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 관리종목(분산 미달, 거래량 부진,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는 제외)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투자 주의 환기종목(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직무제한 위반 등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2회 이상 또는 대표이사 교체가 3회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은 제외)
- 감사보수 미지급 · 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의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 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부감사법상 특정사항(재무제표 제출 ·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감사인의 자격제한, 감사선임시 준수사항, 감사인 선임 보고 · 통지 · 공고, 감사인 해임 · 재선임,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권, 감사인의 권한, 부정행위 등의 조사 · 시정요구,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
- 기준 금액 이상의 횡령 · 배임 사실이 발생하여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 포함) 고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로서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회사
- 6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 소유경영 미분리 : 비상장법인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 2 기업내부시스템 정비(정관 변경)

코넥스시장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장요건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비상장기업인 상태에서 작성된 기존 정관을 검토하고, 상장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항목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요건 충족을 위하여 정비해야 하는 항목은 1주당 액면가액, 주식 양도제한 해소 및 전자증권 발행관련 사항 등입니다. 참고로, 1주당 액면가액은 상법상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이므로 액면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이미 정관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종류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1. 1주의 금액(액면가액)

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액면가액이 높아 상대적으로 상장주식수와 유통주식수가 적다고 판단되면 액면분할을 통해 주당 가격을 낮추고 유통 주식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2. 주식 양도제한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경우 상장신청 전 해당 조항의 정비를 통해 양도제한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제한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폐쇄적 주주 구성을 갖고 있는 비상장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주가 거래소 시장을 통해 활발히 매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장 이후의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제한이 있으면 투자자간 해당 주식의 활발한 유통이 어려워져 주식의 적정한 가격 형성이 보장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 제한에 따르는 주가 왜곡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식 양도 제한 예시

- 정관에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
- 사적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예. 대표이사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해당 주식에 대해 일정 기간 양도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 등)

### 참고 정관 기재사항

〈“2018 상장회사 실무해설집(한국상장회사협의회)” 참고〉

☞ 정관 기재사항은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정관 기재시 효력사항 등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등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① 절대적 기재사항

- ▶ 의미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정관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말하며, 기재 누락 또는 내용 위법시 정관 효력 자체가 무효화되는 사항
- ▶ 근거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 기재사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❷ 상대적 기재사항

- ▶ **의미**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
  - \* 법률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등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에 해당
- ▶ **근거** 「상법」 제329조, 제337조, 제345조, 제346조, 제356조의2 등
- ▶ **기재사항** 무액면주식의 발행,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 주식의 전자등록, 중간배당제도의 채택 등

### ❸ 임의적 기재사항

- ▶ **의미** 해당 내용이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 \* 정관 외에서 정해도 효력이 있지만 정관으로 정하면 더 명확해지고, 해당 내용 변경시 정관 변경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효과 기대
- ▶ **기재사항** 주권의 종류, 주식 명의개서 절차,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사업연도, 배당금의 지급시기 등

## 3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및 전자증권 전환

### 1.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식 관련 사무일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337조제2항에 따라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현재 거래소는 증권거래의 안정화와 경제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해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넥스시장도 신규상장 신청기업에 대해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을 상장신청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총 3곳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 정관 변경 및 주주총회 개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려면 그 근거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 따라서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의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근거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2) 이사회 결의

정관변경을 통해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이사회의사록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등기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3) 선임계약 체결

기업은 3개 명의개서대행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관,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대행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 4)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및 등기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은 등기사항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회사의 본사는 2주간, 지점은 3주간 내에 선임등기를 해야 하며, 기업은 해당 사실을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 2. 전자증권 전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비롯한 모든 주권상장법인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을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회사는 상장하려는 주식의 전자등록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상장하는 주식의 전자증권 전환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아래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전자증권제도”를 참고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상세내용 및 추가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정관 변경

기발행 증권등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려는 비상장 증권 발행회사는 해당 증권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환하고자 하는 증권유형이 주식인 경우, 정관 변경 문구는 증권사무 위탁계약 중인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2) 발행인관리계좌 개설등

발행회사는 전자증권법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발행인관리계좌는 발행사별로 하나의 번호만 부여되며, 각 증권별로 발행등록 서비스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서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전심사

발행회사는 전환대상 증권이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해당 증권의 종목별 기본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전자등록 신청

사전심사 완료 후 발행회사는 해당 종목의 전환일을 지정하여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최소 한달 이후 전환등록이 가능(전자증권법 제27조)하고, 채권의 경우 신청일 다음날부터 전환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환등록일 전일, 발행회사는 주식의 경우 특별계좌 수량을, 채권의 경우 예탁수량을 최종 확인하여 최종 전환수량을 확정합니다.

#### 5) 권리자 공고

전자등록 신청 결과 전자증권으로 전환이 예정된 발행회사는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의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하여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주명부상 권리자(주주 및 질권자)에게 전자증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내사항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합니다.

##### ※ 주주명부상 권리자 대상으로 안내하는 사항(전자증권법 제27조제1항)

-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이하 “기준일”)부터 소유증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상실
- 권리자는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증권이 전자등록되는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의 자기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발행인은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함

# IV

## 형식적 심사요건 가이드

1. 공통요건
2. 일반상장
3. 특례상장



## IV. 형식적 심사요건 가이드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심사를 위한 형식적 심사요건은 상장유형(일반상장, 기술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과 특례상장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요구되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 상장유형별 형식적 심사요건 구분 】

공통 요건	개별 요건		
▶ 중소기업 해당 ▶ 감사의견 적정 ▶ 주식 양도제한 해소 ▶ 1주당 액면가액 구분	①일반상장	▶ 지정자문인 선임	
	②기술특례상장	▶ 기술력 확보(BB 이상) ▶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 지정기관투자자 상장동의	
	③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	▶ 크라우드펀딩 규모 - 모집금액, 투자자수 등	

## 1. 공통요건

### 1. 중소기업 여부 확인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장대상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봄야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장 신청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발급 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나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행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는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상장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증빙 서류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상 “중소기업”의 범위

※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 ◆ 다음 ①~④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중소기업”이라고 정의

###### 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1)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펠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자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함.

(2)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ii)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sup>주1)</sup>는 제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sup>주2)</sup>인 기업
  - \* 주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주2)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함.
- 가)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 나)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 iii)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상기 ①의 (1)을 충족하고 (2)의 i) 또는 ii)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상기 ①의 (1)을 충족하고 (2)의 i) 또는 ii)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로서 상기 ①의 (1)을 충족하고 (2)의 i) 또는 ii)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위의 요건 적용시 해당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sup>☞</sup> 중소기업 유예제도  
(다만, 사유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예적용 제외)

## ① 참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공지사항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 기준 작성

###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 중소기업간 협업 및 정책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일반현황, 우수중소기업DB, 중소기업 확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 \* SMINFO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fo.mss.go.kr>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한국기업데이터(주)가 운영

### ②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SMINFO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
  - (간편장부 작성대상 &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 회원가입 → ②신청서 작성 → ③확인서 발급
  - (합병 · 분할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오프라인서류제출 대상기업)
    - 회원가입 → ②신청서 작성 → ③오프라인 자료제출 → ④확인서 발급
  - (그 외) ①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 ②온라인/오프라인 자료제출 → ③회원가입 → ④신청서 작성 → ⑤확인서 발급

※ 상세 발급 절차는 SMINFO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참고

## 2. 감사의견 적정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합니다. 즉, 외부감사 후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중 하나일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이 어렵습니다.

### 감사의견 의미

#### ①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석 및 기타 공시 등도 적정하게 제시되는 등 합리적 수준에서 작성된 것임을 표명

#### ②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 재무제표중 일부 정보가 누락된 채 작성되었거나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해 작성된 경우 또는 기말 이후 감사계약이 체결되어 감사인이 적정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표명

#### ③ 부정적의견(adverse opinion)

: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경우에 표명

#### ④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감사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도 등 감사대상기업이 중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경우에 감사의견 표명 자체를 거절

한편, 상장신청 및 상장 시점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사업연도 종료 후 상당기간이 지나(반기 경과) 신규상장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이 확정되기 전 신규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추가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건 】

상장(신청) 시기	추가 제출 서류	취지
상장신청 당시 최근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승인을 위한 정기주총 개최 전 신규 상장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법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적정)</li> <li>▶ 최근 사업연도 반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검토의견 적정)</li> </ul>	<p>기업이 결산 주총 때까지 신규상장 신청을 미뤄야 하는 부작용 해소</p> <p>(주총 승인 후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 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p>
상장신청일이 해당 사업연도 (상장을 신청한 사업연도) 반기가 경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연도 반기재무제표</li> </ul>	사업연도 종료 후 반기가 지난 만큼 반기 동안의 기업 영업 활동 및 재무상황 평가
최근 사업연도에 임의감사를 수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임의감사인의 감사보고서</li> <li>▶ 상장 신청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에 대한 법정감사인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한정)의 감사보고서</li> <li>▶ 상기 법정감사인이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 소급 감사보고서</li> </ul>	최근 사업연도에 법정감사를 수감하지 못하더라도 임의감사를 수감한 경우, 상장 신청 기회 부여

## 3. 회계처리기준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FRS(국제회계기준)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번호체계, 적용범위, 시행일, 경과규정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정하여 2011년 도입한 회계기준

하지만, 초기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K-IFRS 적용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K-IFRS나 종전의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코넥스시장 상장 이후 적정한 시기에 K-IFRS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은 K-IFRS 적용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K-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상장 희망 기업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 재무제표의 예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준비 기간을 갖고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코넥스기업의 K-IFRS 적용 면제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5조(회계처리의 기준)</b>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p> <p>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p> <p>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p> <p>② (생략)</p> <p>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조(회계처리기준)</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p> <p>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p> <p>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p>

참고로 시장개설 이후 2019년 9월말까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 중 약 83%가 상장신청 직전사업연도에 K-GAAP을 적용하였습니다.

#### 【 코넥스시장 신규상장기업 적용 회계기준\* 】

상장연도	K-GAAP	K-IFRS	합계
2013	38사	7사	45사
2014	28사	6사	34사
2015	43사	6사	49사
2016	40사	10사	50사
2017	24사	5사	29사
2018	15사	6사	21사
2019(~9월)	8사	1사	9사
계	196사	41사	237사

\* 주) 코넥스시장 상장신청 직전사업연도에 적용한 회계기준

## 2 일반상장

### 1. 지정자문인 선임

#### 1 지정자문인 자격

코넥스시장에 일반상장하려면 신규상장 신청 전에 자격을 갖춘 자와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정자문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19년 9월말 현재 총 19사가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지정자문인 자격 】

- ❶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인가업무 단위 중 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일 것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 유형	최저자기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500억원

- ❷ 거래소「회원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회원\*일 것

\*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등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6조(지정자문인의 자격)》

#### 【 지정자문인 현황('19년 9월말 기준) 】

회사	IBK	한국	NH	KB	하나	하이	신한	교보	미래	키움
종목수	31	17	17	16	10	9	7	7	6	5
유진	대신	SK	현대차	한화	신영	베스트	상상인	KTB	유안타	미지정
5	4	3	3	2	2	2	2	1	1	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기간 동안 지정자문인과의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다른 지정자문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정자문인을 선임하려는 기업은 “[부록2]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표준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지정자문인의 역할

지정자문인은 소규모 초기 중소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 준비 및 상장 유지를 돋고, 투자자 보호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코넥스시장만의 특별한 제도이며,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지정자문인은 사실상의 후견인(Guardia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자문인의 역할은 크게 상장 전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장 준비 단계에서는 “기업실사 → 상장자문 → 적격성심사(심사보고서 작성) → 상장신청” 등 상장준비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고, 상장 이후 단계에서는 공시·신고 대리,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LP호가 제출 등 상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 지정자문인의 역할 】

구 분	내 용
상장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업실사(Due Diligence) 및 기업실사보고서 작성</li><li>- 상장적격성 심사 및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li><li>- 신규상장절차 등에 관한 조언, 자문 및 신규상장 사무처리</li></ul>
상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관련법규 및 거래소규정 준수 관련 컨설팅</li><li>- 공시·신고 업무의 자문 및 대리</li><li>- 기업설명회 개최 권고 및 지원(반기 1회 이상)</li><li>-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게시(연 1회)</li><li>- 유동성공급호가(LP) 제출 등</li></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정자문인 업무 관련 내용의 기록 및 보관</li></ul>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4조(지정자문인의 선임 등)》

### 3 지정자문인의 의무

지정자문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장신청법인의 상장적격성심사 등 상장 준비 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상장한 이후에도 공시·신고 대리, IR,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및 자문 제공 등 상장유지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지정자문인은 그 업무수행이 매우 공정해야 합니다.

즉, 해당 기업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해상충이 없어야 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이 밖에 공정한 업무수행, 비밀유지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지정자문인의 의무)

- ① 지정자문인은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이해상충이 없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와의 계약과 그에 따른 지정자문인 업무수행이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 ⑤ 지정자문인은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에게 투자자의 투자판단이나 시장건전성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결의, 결정 또는 사실발생이 예측되거나 인지한 경우 거래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상충 여부는 아래와 같이 지정자문 대상기업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지정자문인이 해당 기준에 따라 이해상충에 해당할 경우,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상장신청 전까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심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 심사는 중단됩니다.

#### ◆ 지정자문인의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자문인이 직접 발행회사 주식등을 단독으로 5% 이상 또는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와 합산하여 10% 이상 보유한 경우
  - 지정자문인 또는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간접보유형태로 상기 비율\*(단독 5% 또는 이해관계자 합산 10%) 이상 보유한 경우
    - \* 종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에서 보유 중인 해당 기업의 주식등에 지정자문인 또는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해당 조합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
- ※ 보유비율 산정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이후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 및 시행세칙 제9조》

참고로 이해상충 여부 판단 기준 중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이해관계인\*을 준용하며, 주식등의 범위에는 주권 외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포함됩니다.

\* 이해관계인 : 임원,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개인인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9.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임원(법 제9조제2항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라.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마.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 4 지정자문인 서비스 선택제

지정자문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장 준비, 상장 신청 및 유지 등 코넥스시장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코넥스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적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규모 및 업력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준비 단계 및 상장 이후 2~3년 내 초기단계까지 기업에 미치는 지정자문인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기업도 서서히 상장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춰 가게 됩니다. 즉, 공시 경험이 축적되어 기업 스스로 공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되고, 때로는 별도의 유동성 공급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 등이 그러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같은 공시능력, 안정적 거래가 지속된다면 기업 입장에선 관련 업무에 관해서 만큼은 지정자문인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업무만큼은 기업 스스로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만약 지정자문인 업무 중 일부를 기업이 스스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외되는 업무를 고려해 지정자문인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기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자체업무 수행을 통해 기업 역량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거래소는 2017년 6월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는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① 기업의 직접 공시 허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4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3조,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2)

- (주요내용) 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이 지정자문인의 공시 · 신고업무 대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기업의 직접 공시 허용

- (신청요건) 상장기간, 성실공시 및 공시능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상장기간 : 상장 후 2년 경과할 것
  - 성실공시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공시능력 : 최근 2년간 공시실적이 우수(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6점 이상)
    - \* 항목별 점수 : 분·반기보고서 건당 2점, 내부결산실적 공시 건당 1.5점.  
자율공시(정약·발행결과, 기타 경영사항 및 해명공시 제외) 건당 1점
- (공시대리 재개) 직접 공시 허용 후 기업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자문인의 공시 및 신고 대리 의무 부활
  - 불성실공시별점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별점이 5점 이상인 경우
  - 기타 : 지정자문인의 공시·신고 대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또한 거래소는 2019년 7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LP) 부담을 완화하고자 LP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② 유동성공급(LP)호가 제출의무 소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제4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제17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

- (주요내용) 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자문인의 LP호가 제출의무 소멸
  - (세부요건) 상장기간 및 거래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상장기간 : 상장후 3년\* 경과(상장후 3년 경과 이후에는 매년 6월말 및 12월말)
      - \* 기술평가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및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 거래규모 : 최근 6개월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형성된 매매거래로 한정하며, 장중대량매매는 제외)이 250주 이상
  - (자율적 LP계약 인정) LP호가 제출의무가 소멸된 종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

### 3 특례상장

#### 1. 기술특례상장

기술특례상장은 일반상장시 요구되는 형식적 심사요건 중 지정자문인 선임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기술평가등급”, “지정기관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및 “지정기관투자자의 상장동의” 등 세 가지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 1 기술평가

###### ① 기술평가등급

코넥스시장에 기술특례상장을 하려면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기술성에 대해 BB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평가 등급이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기술성 등의 우열 여부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합니다.

###### 【 기술평가등급 】

평가등급	등급별 정의
AAA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
AA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A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BBB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BB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B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
CCC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CC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C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
D	보통 수준 이하의 기술력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별표4] 기술평가등급》

기술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주요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

구분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주요 평가사항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의 완성도</li> <li>기술의 자립도 및 확장성</li> <li>기술의 모방 난이도</li> </ul>
	기술의 경쟁우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력기술의 차별성</li> <li>주력기술제품의 수명</li> <li>기술개발 및 수상(인증) 실적</li> <li>지식재산보유현황</li> <li>연구개발 활성화 수준</li> <li>연구개발 투자비중, 규모 및 적정성</li> </ul>
	기술인력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경영 경험수준</li> <li>기술경영 지식수준</li> <li>기술경영 관리능력</li> <li>주요 경영진의 전문성</li> <li>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li> <li>최고기술경영자의 전문성</li> <li>기술인력의 전문성</li> </ul>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제품의 생산역량</li> <li>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자본조달능력</li> <li>기술제품 판매처의 다양성</li> <li>기술제품 판매처의 안정성</li> <li>기술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li> </ul>
시장성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규모</li> <li>주력 기술제품 시장의 성장성</li> <li>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구조 및 특성</li> </ul>
	기술제품의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제품의 시장지위</li> <li>경쟁제품 대비 비교우위성</li> </ul>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기준》 [별표]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 ②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 중 한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기술신용 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기술전문평가기관은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 ①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 (자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2항》

- (대상기관)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등 총 6개 기관이 해당

### ② 기술전문평가기관

-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자

- i) 정부산하 연구기관 또는 평가기관일 것
- ii) 박사 및 기술사 등 전문평가인력(외부가용인력 포함)이 10인 이상일 것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3항》

- (대상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총 7개 기관이 해당

### ③ 기술평가절차

#### ① 기술평가신청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코넥스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으려면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기술평가신청서를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 평가신청서는 아래 서식(「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기준」[서식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기술평가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신청을 하면 해당 평가기관은 기술평가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평가신청 후 심사 소요기간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약 4주가 소요됩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평가기관은 기술평가등급이 기재된 아래와 같은 기술평가서(「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기준」[서식3])를 발급하고, 특례상장신청기업은 해당 기술평가서를 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기술평가신청서(예시)

- ▶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술신용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의 충실성 및 적정한 정보의 제공 등은 향후 기술신용평가에 '업체신뢰도' 평가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 기업 개요

기 업 명		법인번호	—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주민번호	—	설립일자	
기업형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주거래은행	
연락처 Tel.		연락처 Fax.	
본사 주소			
표준산업분류	제1사업: 표준산업분류코드(6자리), 표준산업명	제1사업 주요 제품 및 상품:	
	제2사업: 표준산업분류코드(6자리), 표준산업명	제2사업 주요 제품 및 상품:	
	제3사업: 표준산업분류코드(6자리), 표준산업명	제3사업 주요 제품 및 상품:	

### 2. 평가대상핵심기술

관련사업부문	평가대상핵심기술의 명칭	주요 제품 및 상품
1		
2		
3		

※ 별도 기술신용조사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제시

## 기술평가서 - ○○○○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민번호	
설립일자			
기업형태			
주소			
TEL		FAX	
표준산업 분류			
주요제품 및 기술			
제출처			
		발급일자	년 월 일
		재무기준일	년 월 일

### ▶ 종합의견

### ※ 유의사항

- **(유효기간)** 신규상장신청시 기업이 제출하는 기술평가서는 발급된 지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신규상장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기술평가서가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평가 제한)**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기술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 기술평가를 위한 관련 서식은 한국거래소 법규사이트([law.krx.co.kr](http://law.krx.c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http://www.krx.co.kr)) 또는 코넥스시장 홈페이지([konex.krx.co.kr](http://konex.krx.co.kr)) 내 “규정/제도 → 법규 → KRX 법규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전문가회의 및 기술평가제도 운영기준」을 검색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2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 ① 제도도입 취지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신청기업이 거래소가 정한 지정기관투자자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투자유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유치 요건을 둔 것은 지정자문인 없이 코넥스시장에 진입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투자유치의 성공여부 확인을 통해 상장신청기업에 대한 간접 검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정자문인 선임 때까지 해당 지정기관투자자가 지정자문인과 같은 일종의 guardian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관투자자의 보유지분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② 투자유치 요건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상장신청일

- i ) 6개월 전부터 ii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와 합산하여 iii )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의 전체 수량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 ◆ 주식등의 범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6항)

-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 대상이 되는 주식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말함
  - 가. 주권
  -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다. 전환사채권
  -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 주식등의 소유비율 및 투자금액 산정시 주권 외의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지분율을 산정

## ③ 지정기관투자자 상장동의

### ① 상장동의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신청법인이 지정기관투자자로부터 상장동의를 받고 이를 증빙하는 상장동의서\*를 상장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상장서식 23] 지정기관투자자 동의서

상장동의 요건을 통해 지정기관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 신청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고, 상장 과정에서 자신이 하게 될 조력자 역할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 지분에 대해 처분 등(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 · 말소 및 매각 등)이 제한되므로, 의무보유 당사자인 해당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상장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② 지분매각 제한(의무보유)

코넥스시장은 원활한 지분거래, 기업간 자유로운 M&A 및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 ·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의무보유(매각제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기술특례상장시 지정기관투자자에 한해 의무보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 후 최대 1년까지 지정자문인이 없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지정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넥스시장의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직후 지정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일시에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 추가급락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을 하려는 기업은 신규상장신청서류 제출시 지정기관투자자의 상장동의서와 함께 의무보유화약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급하는 소유주식등의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상장서식 25] 소유주식 등의 의무보유화약서, 의무보유증명서(한국예탁결제원 발행)

의무보유 기간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의무보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정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

구 분	내 용
의무보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일부터 6개월간</li> <li>- 6개월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상장일 현재 소유주식등의 10%에 상당하는 보유분 매각 가능</li> </ul>
의무보유 예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의무이행</li> <li>-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 · 합병</li> <li>-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에게 소유주식등을 장외 또는 시간외대량매매로 매도</li> <li>- 해당 기업이 지정자문인 선임</li> </ul>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8》

## 참고

## 의무보유(Separate Safekeeping, 보호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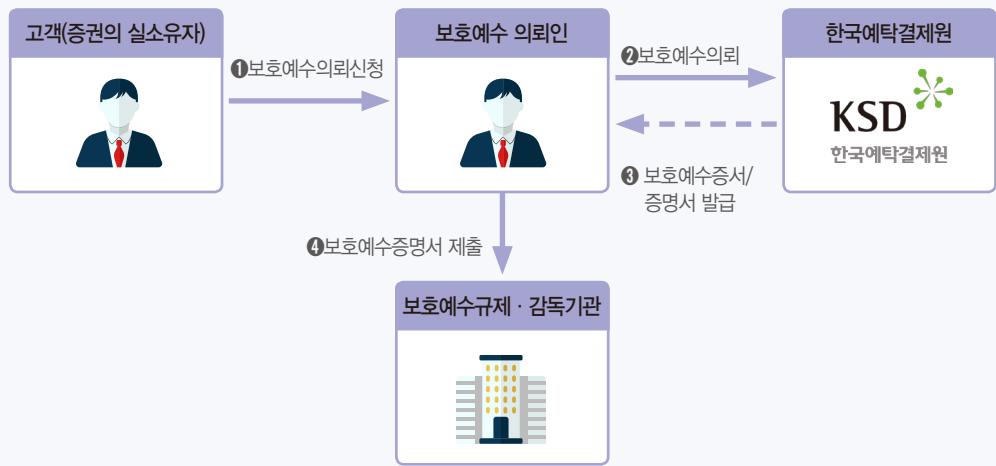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서비스 안내 – 보호예수〉를 참고하여 작성된 내용이며, 상세내용 및 추가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개념

-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계약 당사자)과 예탁결제원간의 보호예수계약에 따라 증권을 보호예수의뢰인별로 분리하고 반환시에도 의뢰인이 의뢰한 동일 증권을 반환하는 증권의 특수한 보관형태
- 계약의 강제성 여부 · 내용에 따라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로 구분
  - \* 코넥스시장 기술특례상장에 따른 보호예수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체결이 강제되며 일정기간 반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의무보호예수”에 해당

### ② 보호예수 절차

- ① 보호예수계좌 개설자(보호예수의뢰인)가 직접 증권을 보호예수할 수 있으며, 보호예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나 의무보호예수 절차에 따라 증권회사 등 보호예수의뢰인을 통하여 보호예수하여야 하는 자는 증권을 보호예수의뢰인에게 인계하고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의뢰 신청
- ② 보호예수의뢰인이 자기분 또는 고객분(고객이 보호예수 의뢰신청)의 증권을 보호예수의뢰서 등을 작성하여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의뢰
- ③ 보호예수 입고가 완료되면 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뢰인에게 보호예수증서 및 보호예수증명서를 발행 및 교부
- ④ 의무보호예수의 경우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증명서를 금융감독원, 법원, 한국거래소 등 의무보호 예수 규제 · 감독기관에 제출



## 4 지정기관투자자 지정 및 자격유지

### ① 지정기관투자자 지정

코넥스시장의 지정기관투자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 증권에 대한 전문적 가치평가 능력 및 투자실적 등을 고려해 거래소가 지정합니다. 투자실적, 전문인력 등 상세 자격요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5를 따릅니다.

- i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ii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ii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iv) 그 밖에 i )부터 iii)까지에 준하는 자

### 【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 】

항 목	요 건
투자실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 증권 투자금액이 150억원 이상일 것 (해당 지정기관 투자자가 출자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금액 합산)
전문인력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법규위반	최근 1년 이내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	거래소로부터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공익과 투자자보호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지정기관투자자로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5》

거래소는 연중 수시로 지정기관투자자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지정기관투자자가 되려는 자는 거래소에 사전 문의 후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9년 9월말 현재 거래소가 지정한 지정기관투자자는 총 26사입니다.

#### ◆ 코넥스시장 지정기관투자자 현황 (2019년 9월말 현재 기준)

구분	기관명
전문투자자 등 (3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투자 회사 등 (23사)	네오플렉스, 대교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동문파트너즈,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서울투자파트너스, 스틱벤처스, 아이엠 엠인베스트먼트,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에스엘인베스트 먼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엘비 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캡스톤파트너스, 케이티비네트워크, 코오롱인베스트 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한화투자증권

## ②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심사

거래소는 매년(4월 이내)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정 기관투자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지정기관투자자가 상장을 동의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시까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 심사 】

구 분	내 용
정기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4월 내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유지 여부 심사 (※ 해당 연도에 신규 지정된 자는 해당 연도 정기심사 제외) ⇒ 심사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여부 결정</li> </ul>
수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관투자자가 상장을 동의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 지정기관투자자가 상장을 동의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경우</li> </ul> </li> </ul>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의7》

## 2.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도 기술특례상장과 같이 일반상장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특성에 맞게 크라우드펀딩 관련 요건(펀딩 대상 및 금액, 참여 투자자수)이 형식적 심사요건으로 추가됩니다.

### 1 크라우드펀딩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대상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3가지입니다. 즉, 주권, 신주인수권, 사채 등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수단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제외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증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증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증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그런데 코넥스시장은 상장대상이 주권(보통주식)이므로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적용 대상도 펀딩대상 증권 유형 3가지 중 지분증권, 즉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대상 증권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권인 경우에도 해당 종류주식이 신규 상장 신청 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장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상 증권의 분류 】

구 분	내 용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이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과 같이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예: 영화제작 등)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2 크라우드펀딩 금액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을 통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펀딩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장추천기관으로부터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을 받은 기업, KSM 등록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그 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상세 펀딩금액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 유형별 특례상장을 위한 크라우드펀딩금액 요건 】

구 분	펀딩금액
① 일반기업	3억원 이상
② KSM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소가 개설한 상장지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업 (⇒ KSM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  * 코넥스 상장예정기업 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1.5억원 이상
③ 추천기관*으로부터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을 받은 기업  * 추천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창조경제혁신센터	1억원 이상
④ KSM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 중 추천기관으로부터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을 받은 기업	0.75억원 이상

### ③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수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펀딩참여 투자자 수가 50인(KSM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은 2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참여 투자자 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한 전문투자자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3) 기타 거래소가 참여 투자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

-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고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인 경우에는 그 주주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③ 영 제11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에게 자사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
-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 발행인이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언론, 학술 및 연구 등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발행인이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농어민단체 등 특정지역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역의 산업체기를 처리, 금융·보험서비스 제공,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발행인이 동창회, 종친회 등의 단체 구성원이 총의에 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로 다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받는 경우 그 주주
-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연고자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라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 참고

## “전문투자자 등”的 범위

※ “전문투자자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 포함)를 말하며, 정확한 해당 범위는 아래 명시된 법령의 해당 조문을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②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증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① 영 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창업자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증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② 영 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의3(코넥스시장에 관한 특례 등) ②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
-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자산의 명의자
- 2의3.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
- 2의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2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❶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를 말함

\*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등

## ❷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②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
- ③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 ④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❸ 연고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발행인의 ①최대주주·②임원·③우리사주조합원·④계열회사(임원 포함)·⑤주주(발행인이 주권의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⑥발기인(설립증인 회사인 경우)·⑦ 재무내용 또는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기타 연고자 등

## ❹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  
    투자기구를 말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❺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자

## ❻ 기타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한 자\*

-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  
    ⇒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명의자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
-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전문투자자 등 범위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제249조의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 · 제3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18조의17제1항 · 제2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 제3항, 제2-2조의6제1항 · 제2항, 제2-2조의3제2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제4조의3제1항제3호 · 제4호, 제13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



## 코넥스시장 상장업무 가이드

# V

## 질적 심사요건 가이드

1. 기업의 계속성
2. 경영 투명성
3. 상장 인프라
4. 투자자 보호



## V. 질적 심사요건 가이드

코넥스시장은 거래소의 상장심사에 앞서 지정자문인이 상장신청기업에 대해 상장적격성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지정자문인이 기업실사 등을 통해 기업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기업의 계속성,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 등 질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토 결과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자문인은 상장 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장신청 서류와 함께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지정자문인의 사전 검증을 거친 만큼, 거래소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는 최대한 빠르게 검증하고, 상장 적격성보고서 등을 근거로 상장신청기업의 질적 심사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게 됩니다.

질적 심사는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코넥스시장은 상장 외형요건에 재무(이익) 요건이 없는 만큼, 질적 심사과정에서 기업이 속한 업종 전망 및 해당 기업의 시장성·성장성을 주로 심사하게 됩니다.

### 【 주요 질적심사 기준 】

#### 1. 기업 계속성

- 산업성장성
- 시장경쟁상황
- 재무안정성

#### 2. 경영 투명성

- 기업지배구조
- 내부통제시스템
- 특수관계인 거래

#### 3. 상장 인프라

- 공시 인프라
- 내부회계관리제도
- 회계시스템 구축

#### 4. 투자자 보호

- 소송 등 분쟁
- 지분 변동
- 주식 분산 등

## 1 기업의 계속성

기업의 계속성은 기업이 속한 산업 및 영업 환경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 성장성, 시장 경쟁상황, 매출 · 이익 변동 가능성 등이 주된 심사 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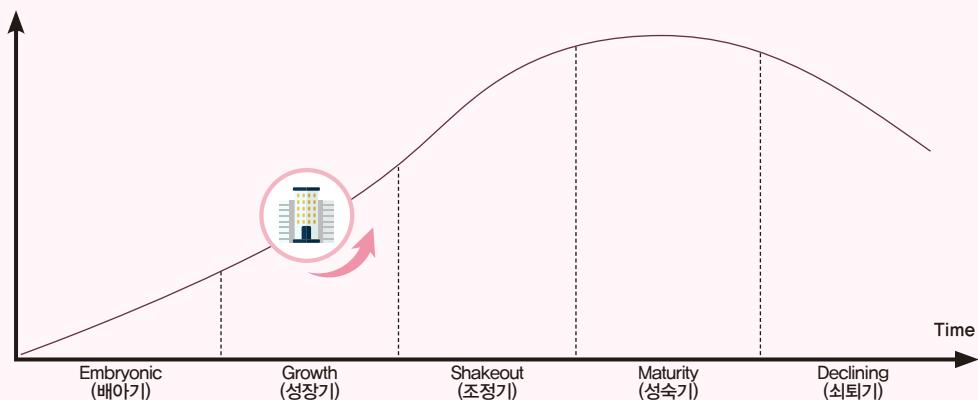
### 1. 산업 성장성

#### 심사 가이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주기를 파악하고, 성장주기가 도입기나 쇠퇴기 등 기업의 영업 환경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 향후 기업의 계속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신청기업의 주된 영업이 속한 산업의 향후 성장성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주기(산업수명주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산업수명주기(Stages in the industry life–cycle) 】



만약 산업의 성장주기 또는 수명주기가 성장기(Growth)나 조정기(Shakeout) 등이 아닌 쇠퇴기(Declining)에 접어들고 있다면 향후 기업의 계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정자문인은 상장적격성보고서에 관련 위험 가능성을 기재하고, 위험해소 전망 및 기업의 대응계획 등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록 현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주기상 수년 내에 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업은 신사업 진출 등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전략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약 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현재의 주된 영위사업과 신규 사업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무분별한 신규 사업 진출로 기업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면 상장 후 기업가치 하락 및 이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는 기업이 제시한 신사업 진출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 성격, 향후 수익성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산업 성장주기와 함께 기업의 주된 영업기반이 속하는 지역적 특수성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주된 매출이 국내시장으로 편중되어 있을 경우 기업의 영업 활동은 국내시장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향후 국내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 글로벌 현황 및 전망이 나쁘지 않음에도 해당 기업의 계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장신청기업의 주력산업이 성장주기상 도입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당장 시장 전체 규모나 개별 기업의 영업 규모가 작더라도 향후 산업 및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당장의 실적이나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 전망도 중요한 심사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자체가 향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국가 경제 및 증권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2. 시장 경쟁상황

### 심사 가이드

경쟁 기업의 신규 시장진입 또는 대체시장의 출현 등으로 해당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유지가 어렵다면 기업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정자문인은 상장신청기업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 속한 산업의 진입장벽, 경쟁 현황 및 기업 경쟁우위 등을 상장적격성보고서에 기재하여 시장 경쟁상황 속에서 상장신청 기업의 현재 위치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상장신청기업이 속한 시장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경쟁상황이 상장 신청기업의 계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산업 특성상 대체 산업의 출현이 예상되거나 이미 출현된 경우 기업의 계속성이 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대체 산업의 존재 여부, 향후 출현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할 경우 거래소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 및 향후 경영비전 전략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의 경영철학 및 전략 등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영업 계속성

#### 심사 가이드

지속적인 매출 발생 및 수익창출 능력 등 영업의 계속성 확인을 위해 시장점유율, 영업수주 현황, 매출·매입 실적, 정부 규제 영향 등을 검토합니다.

#### 1 지속적 매출·수익 발생 가능성

기업의 계속성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은 지속적인 매출 및 수익 발생 여부입니다. 즉, 상장 신청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으로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는지, 앞으로도 계속 발생 가능한지, 영업이익의 창출 전망은 어떤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경제적 실체로서의 기업의 계속성(going concern) 유지 가능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심사기간 동안 최근 사업연도 등 과거 기업 실적은 물론, 향후 2~3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상 영업실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수주잔고 및 기술이전계약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주잔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면 해당 추세가 산업 및 경기 변동에 따른 업계 내 공통 현상인지, 아니면 상장신청기업의 개별적인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향후 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또는 수익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소는 상장적격성보고서(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심사청구서)에 기재된 기업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파악하고, 만약 시장점유율이 정체 또는 하락 추세에 있거나 향후 하락이 예상되는 등 기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기업 및 지정자문인에게 해당 원인분석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예. 경영전략, 기술력 입증, 신제품 개발 계획 및 R&D 현황)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정부 규제 및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

만약 상장신청기업이 속한 업종이 정부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면 해당 규제가 기업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인·허가의 연장 등 변수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상장신청기업에 관련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 및 기업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심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음식료품 제조 또는 게임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가능성, 향후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과거 정부로부터 관련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규제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이에 따른 영업 활동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만약 상장신청 전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로,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예상될 경우 거래소는 최종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상장심사결과 확정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 등에 따라 기업이 현재의 독·과점 지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기업 영업의 계속성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며, 기업은 거래소에 핵심경영 전략 등을 제출하여 해당 위험의 극복방안 및 경감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 3 매출처 편중

상장신청기업의 매출처가 대기업 등 특정 소수 매출처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향후 매출처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추가 매출처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업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장신청기업의 매출처가 단일 혹은 소수 매출처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기업의 기술/가격/영업 등의 경쟁력 확보 여부와 최근 시장점유율 추이 등을 검토하고, 상장 후 단기간 내 기존 매출처와의 매출 단절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만약 특정 또는 소수 기업에 매출이 편중되어 있다면, 기업은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 및 향후 거래지속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처의 편중이 상장신청 기업의 기술력, 생산라인의 독자적 위치, 상호 의존적 거래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장신청기업이 매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매출처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밖에 없거나 주요 매출처의 매출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상호 의존적 거래관계가 명백하고, 이에 따른 영업 지속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매출처가 편중되어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매출 집중에 따른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기업의 영업 전략(사업 다각화, 매출처 다변화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매출처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상장신청기업에 계약서, 구매주문서, 수주잔고 등의 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재무 안정성

### 심사 가이드

차입금 규모, 영업현금흐름, 우발채무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향후 재무 안정성을 심사합니다.

### 1 차입금

기업은 상장적격성보고서(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재무안정성 지표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동종업계 대비 수치가 열위에 있을 경우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거래소에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차입금 규모가 과도한 경우라면 기업은 차입금 발생 및 증가 사유, 상환계획 등 향후 대책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과도한 차입금 부담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자칫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상장 이후 투자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심사과정에서 상장신청기업의 차입금 규모 등과 관련해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 i ) 차입금 규모, 구성 비율, 만기구조 등 현황 및 증가 원인 분석
- ii ) 동종 업계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열위 여부 판단
- iii) 차입금 상환 능력(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창출 능력) 및 상환 계획

만약 영업 특성에 따라 차입금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기업은 이를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기업이 상환 능력 및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를 못하는 경우 상장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필요시 기업은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2 영업현금흐름

차입금 증가와 함께 기업의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 중 하나가 기업의 영업 현금흐름입니다.

영업현금흐름의 악화가 차입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영업호조로 차입금 규모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영업현금흐름이 나타날 경우 차입금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규모를 분석하고, 혹시 상장 이후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없는지 그 위험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채비율 등 다른 재무관련 지표가 양호하더라도 현재의 영업현금흐름이 좋지 않고, 향후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면 상장 승인의 중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3 우발부채

상장신청기업이 자회사 등 관계회사의 채무보증, 담보제공 등 타인과의 계약으로 인한 우발부채가 있는 경우 해당 우발부채가 현실화되면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상장적격성보고서(신규상장심사청구서)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상장신청 기업의 우발부채 현황 및 영향(금전적 소송 등 우발채무의 현실화에 따른 기업 재무 영향)을 검토하고 기업의 계속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 우발부채

#### ❶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우발부채란 다음의 (1)이나 (2)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함

- (1)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 (2)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가)나 (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 (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❷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우발부채는 다음의 (1)이나 (2)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함.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함

- (1) 과거사건은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무
- (2)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4 채권회수 관련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급증은 기업의 영업활동 또는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 안정성 검증을 위해 거래소는 관련 자료를 통해 기업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 말 대비 매출채권 잔액 및 재고자산이 급증하였다면, 우선 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 및 재고자산 누적 장기화에 따른 영업 안정성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연령분석, 재고자산 내 제품 비중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기업에 관련 자료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더라도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관련 사유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2 경영 투명성

경영 투명성 심사는 상장신청기업이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불법 행위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주된 심사항목입니다.

### 1. 기업지배구조

#### 심사 가이드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최대주주 · 경영진의 경영침해 가능성 등 상장신청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 1 경영의 독립성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공개(IPO) 또는 장내매매 등을 통해 주주 구성이 다양해집니다. 상장 이전의 기업이 일부 주주의 회사였다면 상장 이후의 기업은 다수의 투자자가 주주가 되므로, 기업 의사결정이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경영의 중요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장기업은 독립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자체 경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 · 인사 등 핵심 경영조직을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지배회사 등 관계회사에 의존한다면 기업은 해당 기업보다는 관계회사를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심사단계에서 상장신청기업의 이사회 구성 현황, 관계회사의 이사 겸직 여부 및 경영 조직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2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가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일부 이해관계자만의 이익을 위해 중요 경영 현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등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상법」에서는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상장법인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선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 상장기업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정해야 함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상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9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참고로 관련 자본시장법령의 시행일(13.11.14)에 맞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있던 사외이사 요건 등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즉,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법상 주권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미만인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도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정원 관련 규정은 적용 받습니다.

### 【 사외이사 선임 의무 면제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b>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b>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 ◆ 이사의 정원(「상법」 제383조제1항)

- 이사는 최소 3인 이상 선임
  - \*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과정에서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훌수로 구성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을 위한 자본금 규모 요건이 없어 이론상으로는 1인 또는 2인 이사 체제의 지배 구조를 갖춘 소규모 기업도 상장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단독 이사 등으로 상장기업으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경영투명성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록 법령상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기업이 이사회 구성을 폐쇄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즉, 기업의 이사회 구성이 모든 주주를 위한 공정한 업무집행 결정에 심각한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예. 이사가 가족 중심이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위주로 구성되거나, 특별한 역할이 없는 친인척 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등)이라면,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경영 독립성에 대해 검증을 하게 됩니다.

☞ 특히, 기업이 특별한 역할이 없는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부당한 부의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사 선임 및 구성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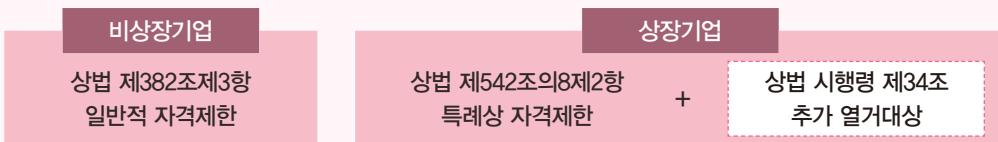
만약, 지정자문인 실사 과정에서 이사회 구조가 위와 같이 독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지정자문인이 컨설팅을 통해 이사회 구성을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장신청기업이 경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면 「상법」 제382조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을 확인하고 이에 저촉되지 않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격요건(특례 자격제한 요건)을 당장 적용받지는 않지만, 향후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관련 적용배제 요건을 고려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 사외이사의 자격 제한

※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상법」상 자격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될 수 없습니다. 제한요건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일반 자격제한 요건〉과 추가로 상장기업에만 요구되는 〈특례 자격제한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 ① 일반 자격제한 ('상법' 제382조제3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 · 감사 ·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② 특례 자격제한 ('상법' 제542조의8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일반 자격제한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만약 재임 중 이에 해당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 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순익 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 ·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3 경영진 겸직

상장신청기업 임원이 타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법에서는 이사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 이사의 경업금지 (『상법』 제397조제1항)

-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 상법에서는 겸직 제한대상 회사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 회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이를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 ① 관계회사 등의 임원 겸직

상장신청기업의 임원이 관계회사 등 타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경영 판단 과정에서 자칫 관계회사 등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결정이 상장신청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결정으로 인해 부의 이전(상장신청기업→관계회사)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장신청기업의 경영 독립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신청기업의 임원 등 경영진은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장신청기업 임원이 겸직대상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투명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동종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논거를 통해 임원 겸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면, 임원 겸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기업은 개인투자자의 주주 참여 등을 고려할 때 비상장기업에 비해 높은 경영 투명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타회사의 임원을 겸직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장신청 전 임원의 겸직 사실이 있다면 가능한 상장신청 전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장신청기업과 겸직 회사 간에 대규모 거래관계가 있거나 겸직 임원이 대표이사인 경우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심사과정에서 임원의 겸직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겸직 사실이 있다면 관련 절차 준수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해당 임원의 관계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여부, 상장신청 기업과 관계회사 등과의 거래관계 내용, 임원 겸직에 따른 상장신청기업의 경제적 손실 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② 대학교수의 겸직

교수 등 교육공무원 등이 상장신청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해당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심사 도중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지연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임직원(교수 등)은 가급적 상장신청 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관련 허가서를 신규상장신청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교수 등 교육공무원의 상장법인 임원 겸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 ·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 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교육공무원등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 4 감사 선임

감사란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행위의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상법에서는 감사 기능을 전담할 상설기관으로서 주식회사에 감사를 두도록 하고, 동시에 회사 선택에 따라 대체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감사·감사위원회의 설치 (「상법」 제312조 및 제415조의2)**

-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상법」 제409조제4항)
-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상근감사제도는 '97년 舊 증권거래법 개정당시 도입된 것으로 '상근'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감사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사에 상근(정기적 출근) 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1) 상근감사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상법〕제542조의10제1항, 「상법 시행령」제36조제1항)

(2) 감사위원회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상법〕제542조의11제1항, 「상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 상장 및 자산규모별 감사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

구분	자산구분	감사제도	선임주체	구성요건	근거법령(상법)
상장	2조원 이상	(특례)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3인</li> <li>• 위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이상 사외이사</li> <li>-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li> <li>- 대표는 사외이사</li> </ul> </li> </ul>	제542조의11 · 12
	1천억원 ~2조원	상근감사 또는 (특례)감사위원회			
	1천억원 미만	감사 또는 (일반)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3인</li> <li>• 위원 중 2/3 이상 사외이사</li> </ul>	제409조 제415조의2
비상장	-				

《상장회사 실무해설집(상장회사협의회) 참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코넥스시장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면제와 함께 상근감사 선임의무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코넥스시장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상근감사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물론 상근감사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지 「상법」상 감사선임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비상근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 【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한편, 「상법」상 비상근 감사에 대해서는 겸임금지 외에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감사에 선임되어 있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상장신청 전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자로 감사를 교체 선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감사의 겸임금지 (「상법」 제411조)

☞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참고로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에도 불구하고 상장신청기업이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10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 상근감사의 자격제한 (「상법」 제542조의10제2항, 「상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함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6.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2. 내부통제시스템

### 심사 가이드

상장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거래, 관련 내규의 구축·운영 등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장기업이 되려면 공개기업으로서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상장을 통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위주의 소규모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기업을 공개하는 만큼, 경영 방식, 기업 운영구조, 의사결정 및 경영판단 과정 등이 투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상장신청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가 적정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효율성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통제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 심사 포인트**

① **내부통제 관련 사내 규정의 보유 여부 및 정비 · 운영 현황**

(예) 이사회운영규정, 감사규정, 보수규정, 임원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 위임전결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②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적정 운영 여부**

(예)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 행사 차단, 이사회 의사록 구비 및 작성 현황 등

③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여부 및 거래 동기 · 조건의 타당성**

(예)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및 관리 현황 체크 등

### 3. 경영진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처분

**심사 가이드**

과거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 · 배임 등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탈세 등으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후 진행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 1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불법행위

상장신청 전에 횡령 · 배임 등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 전에 관련 법적 제재 등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 후 유사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비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새로 구축한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정 검증기간(watching period)을 거친 후 상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내부통제제도 등

- 사규(윤리경영규정,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등) 정비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윤리·준법경영 교육 실시
- 내부 감사조직 운영, 상근감사·사외이사 등 경영진 견제시스템 구축

참고로 지정자문인은 기업 실사를 통해 해당 사실 여부를 체크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상장적격성보고서에 관련 내용, 예상 투자위험 및 내부통제 정비사항 등을 충분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장 이후 상장적격성보고서가 외부에 공시되는 만큼, 관련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의 자료로 활용되며, 사업보고서 등에 내부통제 정비사항 이행 내역을 기재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 2 회계감사, 세무조사 결과 등

과거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 등에 따른 검찰통보 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거나 회계처리 신뢰성에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된 사실이 있었는데, 만약 해당 내용이 적절히 보완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상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각종 조사 및 이에 따른 지적사항이 상장신청기업에게만 적용되고, 해당 지적사항 등이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 여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의 반영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의 추징세금, 과태료 등이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규모인 경우에는 상장신청기업의 영업 안정성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하게 됩니다.

## 4.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심사 가이드

과거 상장신청기업과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간 거래가 있었거나 지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 법규 준수 및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필요성을 떠나 거래 규모 및 조건에 따라 기업에 손실을 끼치게 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신청기업이 해당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지정자문인은 Due Diligence시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을 경우 거래 동기의 적정성, 거래 조건의 합리성 및 절차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는 거래가 과거에 있었거나 지속되고 있다면 내부통제규정을 정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타 거래 대비 불합리한 조건의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하여 부의 이전이 발생하였다면 이전된 부당 이득을 기업에 반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적격성보고서〉내 「VII.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용 → 5.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용」 및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의견」 부분에 해당 거래내용 및 경영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투자 리스크, 내부통제 개선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구조 또는 영업환경 등 상장신청기업이 처한 특수 상황에 의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거나 거래의 공정성이 의심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현행 「상법(제398조)」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에 앞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542조의9에 따라 특히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금지 등 이해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금지 규정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 ④ · ⑤ (생략)

#### 〈상법 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어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을 포함한다)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
- ④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한편, 상장신청기업에 관계회사가 있고 해당 관계회사와 거래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 매출채권의 회수지연, 부당거래, 차입금 제공 등으로 신청기업의 부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회사의 유동성 편의를 위해 관계회사 매출채권 회수기한을 늦추거나 관계회사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관계회사를 간접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 내역, 매출액과 매입액 확인,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부의 이전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3 상장 인프라

상장기업은 상장 이후 적정 공시제출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상장신청 전 해당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 1. 공시 인프라 구축

#### 심사 가이드

상장 후 기업이 원활하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등 공시의무 이행 역량(인력·조직)과 지정자문인과의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넥스시장 상장 후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공시의무의 차질 없는 이행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은 공시전문 인력(공시책임자 1인 및 공시담당자 1인)을 두어야 합니다.

#### ① 공시책임자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제3항, 제23조)

① (역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

②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i. 상근이사(「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포함)

ii.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법인에 상근하면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 혐의로 공시된 적이 있거나 횡령·배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공시 책임자가 될 수 없음

## 2 공시담당자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3조)

- ① (역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 신고 실무 업무를 수행
- ② (자격) 일반기업의 경우 지정자문인의 실무자를 공시담당자로 신고
  - i. 일반기업 : 지정자문인의 실무자
    - ※ 지정자문인이 공시 · 신고 업무를 대리하므로 실제 공시를 제출하는 지정자문인의 실무자를 공시담당자로 등록
  - ii. 특례상장기업 : 상장기업 공시실무자
    - ※ 특례상장기업도 상장 이후 지정자문인을 선임하게 되면 공시담당자가 기업의 공시실무자에서 지정자문인의 공시실무자로 변경

지정자문인이 없는 특례상장기업과 달리 일반기업은 공시 · 신고 업무를 기업이 아니라 지정자문인의 실무자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원활한 공시 및 공시 내용의 신속성 ·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공시실무자와 지정자문인의 공시담당자간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상장심사 과정에서 상장신청기업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통해 공시책임자와 공시 대리인(공시담당자)의 지정 여부, 경력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필수 공시조직 외에 공시 가능인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장 후 원활한 공시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 「공시책임자 등 (신규 · 변경) 신고서」, 「공시책임자 직무수행 승낙 확인서」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3항에 따라 신규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후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사유인 만큼,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해야 하는 특례상장신청기업의 경우 거래소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보고서 초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사업보고서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내부회계관리제도

### 심사 가이드

상장기업은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포함)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상장기업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상장부담 경감을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의무”, “K-IFRS 도입”, “신규상장신청시 지정감사인 선임의무” 등은 면제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의무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법 제8조)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 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 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 또는 감사하여야 하며, 검토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장신청기업은 상장신청 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록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신청기업의 경우 당장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의무대상은 아니나, 상장 이후에는 바로 적용 의무대상이 되므로 가급적 상장 전에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장신청기업이 상장신청 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거래소는 심사 과정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진행 현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외부감사법 제47조)

제47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 3.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심사 가이드

상장신청기업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 및 관리를 위해 적합한 인력, 내부규정 및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상장기업이 되려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결산 실적과 관련된 공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회계인력, 규정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장신청기업 중 간혹 사내 회계시스템이 취약하거나 회계운영 및 자금집행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전사적 업무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ERP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회계장부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등 회계자료를 작성하는데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정기적인 마감처리가 어려워 일별 마감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기업 내에 ERP시스템 등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은 관련 부서간 재무 데이터를 직원들이 공유하고 보고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내부감사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관련 업무의 기능별 분화도 필요합니다.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와 자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금담당자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승인과 출납 업무의 기능을 분리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RP, 자체기장 등은 상장승인을 위한 필수 고려사항은 아니나,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 기업현황보고서 등에 기재되는 결산실적의 적시 공시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 보호

상장기업은 상장 전·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들이 다수의 투자자, 즉 주주의 재산적 가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법적 분쟁, 소송 등은 다른 어떤 사유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및 공시의무 대상자는 해당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 1. 소송 등 분쟁

#### 심사 가이드

법적 분쟁 또는 소송이 있는 경우 발생 사유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고, 해당 사건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소송 및 분쟁이 있는 경우 기업 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규모가 기업 규모 대비 클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및 지정자문인은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기업 또는 상장신청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 등이 소송 등의 분쟁에 연관되었을 경우 해당 분쟁의 사실관계와 상장신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 소송 유형에 따른 검토 사항 】

소송 유형	소송 종류 및 검토 사항
기업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전 관련 분쟁) 채권채무관계에 근거한 분쟁, 손해배상 소송 등</li> <li>(지적재산권 등 분쟁)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인·허가관련 분쟁 등 ⇒ 분쟁이 기업의 매출, 수익성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검토</li> </ul>
경영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소유권 분쟁(주식발행무효·취소 소송, 주식양도계약 무효 등)</li> <li>신탁계약 등 경영권 관련 분쟁, 임원 선임·해임 관련 분쟁 등 ⇒ 기업지배구조 변경 가능성 및 상장신청법인에 미치는 영향 검토</li> </ul>
경영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결의절차 하자로 제기된 분쟁(예. 신주발행, 영업·자산양수도 등 관련) ⇒ 내부통제장치 작동 점검 및 재발방지 방안 검토</li> <li>상장신청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경우 ⇒ 관련 경영진 교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영향 등 검토(예. 기소대상이 현 경영진인 경우 확정판결 이후 상장신청, 과거 경영진인 경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구축 등 검토)</li> </ul>
거래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행주식의 효력 관련 분쟁(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등) ⇒ 거래안전 저해 가능성을 고려, 해당 분쟁 종료 후 상장승인 가능</li> <li>주식관련 사채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무효·취소 소송 ⇒ 소송 결과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변경 여부 검토</li> </ul>

만약, 분쟁 또는 소송사실이 있는 경우 지정자문인(특례상장의 경우는 해당 상장신청기업)은 상장적격성보고서(신규상장심사청구서) 본문에 해당 소송·분쟁 등의 사실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고, 지정자문인이 있는 경우 지정자문인은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 의견」에 해당 건과 관련된 투자위험 요소 및 상장신청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지정 자문인의 의견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송가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이거나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대한 분쟁으로 판단하여 상장적격성보고서(신규상장심사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사 결과 현재 관련 분쟁이 진행 중에 있고,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기업의 패소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가 상장신청기업의 계속성 및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장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2. 지분 변동

### 심사 가이드

상장신청 전 또는 심사기간 중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 VC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투자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 상장신청 전

거래소는 상장적격성보고서에 상장신청 당시 주주 현황뿐만 아니라 상장 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등 변동 현황도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즉, 상장신청 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내역(변동일자, 주당금액, 증감수량 및 사유 등)의 확인을 통해 경영권 변동 현황 및 거래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적절한 가치평가 없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 해당 거래의 타당성 등을 기업 및 지정자문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상장 전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저가로 유상증자 등을 하는 경우 상장 후 투자하게 되는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해당 지분 변동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 상장신청 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및 제173조제1항에 따라 5% 이상 보유주주(본인 및 특별관계자) 및 임원·주요주주는 상장 후 5영업일 이내에 지분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코넥스시장의 신규상장은 일반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영업일 전에 심사결과가 통보되며, 상장승인이 된 경우 지체 없이 상장적격성보고서(신규상장심사청구서)를 KIND(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장규정에서 신규상장신청 이후 지분 변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장적격성보고서(신규상장심사청구서) 공시가 이루어진 후 위의 지분공시 대상자의

지분율이 변동될 경우 공시 내용과의 차이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상장적격성 보고서(신규상장심사청구서)를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공시 대상자의 경우 신규상장신청 이후 발생하는 지분변동은 가능한 상장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신규상장 후 지분공시 의무 】

공시 종류	보고 의무자	관련법령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5% Rule)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그 본인 및 특별관계자	자본시장법 §147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임원(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 주요주주(10% 이상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자본시장법 §173①

## 3. 주식 분산 등

### 심사 가이드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통한 기업의 적정주가 발견, 주가왜곡 차단 등을 위해 상장신청기업에 대해 가급적 상장 전 충분히 주식을 분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코넥스시장에는 주식분산에 대한 별도의 상장요건이 없습니다. 즉, 코넥스시장은 공모를 통한 지분분산 없이 직상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상장을 하게 되면 거래가능 물량 자체가 기존 주주의 보유지분으로 제한됨에 따라 상장 후 활발한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량 부진에 따른 부작용(적정 주가 발견 곤란, 주가왜곡, 신규 투자자 매수 불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상장 목적인 신규 자금 조달 및 기존 투자금의 회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장신청기업의 주식이 소수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상장신청 전 일부라도 주식 분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장신청 전 주식분산이 어렵다면, 상장 이후에라도 주식거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신규상장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주식분산 의무가 적용되며, 해당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코넥스 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제외한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발행된 보통주식 총수에서 5% 이상의 주식을 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①), 자기주식(②), 그리고 벤처금융·전문투자자·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주주가 소유하는 주식(③)을 제외한 것을 분산된 주식으로 봅니다.

# VI

## 코스닥 이전상장

1. 이전상장 유형, 요건 및 혜택
2. 이전상장 현황



## VI. 코스닥 이전상장

코넥스시장은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이 코넥스시장을 경유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상장기간, 기업실적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제도를 통해 이전상장시 일부 질적요건심사 면제 및 상장 심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1 이전상장 유형, 요건 및 혜택

#### 1. 이전상장 유형

원칙적으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려면 일반 비상장기업이 바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아 상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일반 이전상장이라 합니다.

일반 이전상을 하려면 다른 코스닥 신규상장과 같이 다양한 현행 코스닥시장 진입 유형 (일반요건, 테슬라요건, 기술평가특례요건, 성장성특례요건, SPAC합병요건 등) 중 기업에 가장 유리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상장하면 됩니다. 자세한 일반상장 요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내 상장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면, 코넥스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이전상장이 있습니다. 특별 이전상장으로는 “신속이전상장(Fast Track)”과 “신속합병상장”이 있습니다.

## 2. 특별 이전상장 요건

### 1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전상장하는 경우 일반 코스닥 신규상장심사보다 심사기간이 단축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최대 45영업일이 소요되나, 해당 방법을 통해 이전상장하는 경우 일부 질적 심사요건의 면제와 더불어 심사기간은 30영업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이와 같이 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동 유형을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이라 합니다.

신속이전상장 제도는 '14.6월 최초 도입된 이후 보다 많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5가지 방법(Track 1, 2, 3, 4, 5)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희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5가지 트랙 중 해당 기업의 실정에 맞는 트랙을 선택하여 코스닥 이전상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거래소는 이전 상장 활성화를 위해 '17.6월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완화하였고, '18.4월 성장성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19.4월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한 요건도 추가하였습니다.



## 【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요건 】

	공통요건	개별요건
Track 1		①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有 ② 최근 사업연도 매출 100억원 이상 ③ 기준시기총액 <sup>주1)</sup> 300억원 이상
Track 2	① 코넥스시장 상장후 1년 경과	① (직전 사업연도) ROE 10% 이상 ② (최근 사업연도) ROE 10%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Track 3	② 지정자문인 추천 <sup>주3)</sup>	①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② 최근 사업연도 ROE 20% 이상
Track 4	③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 <sup>주4)</sup> 총족	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00억원 이상 ②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20% 이상 증가
Track 5		①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 ② 시가총액 <sup>주2)</sup> 이 2천억원 이상 & 자본금 규모 초과 ③ 기준시기총액 <sup>주1)</sup> 3천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제9항

주1) 상장예정주식수 ×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가격

주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코넥스시장 시가총액(= 종가×상장주식수)을 일평균한 수치

주3) 추천 지정자문인이 6개월 이상 해당 기업과 지정자문인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것

주4)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4)

- 최근 1년간 금융관련법규 또는 거래소 규정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그 밖의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을 것

신속이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간 단축 외에 형식적 심사요건 및 질적 심사요건 중 일부를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신속합병상장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방법 중 하나로 SPAC합병을 통한 상장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장 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도 일반 비상장법인과 같이 SPAC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15.6월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SPAC 합병으로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경우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에 준하는 상장특례가 적용되는 신속합병상장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속합병상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신속합병상장 요건 】

구 분	요 건
신속 합병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2사업연도<sup>주1)</sup>에 각각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 및 영업이익 시현</li> <li>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li> <li>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지정자문인의 추천</li> <li>기업경영의 건전성 등<sup>주2)</sup> 총족</li> </ul>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제9항, 제19조의4제1항 』

주1) 코넥스시장 상장 이후의 사업연도로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되, 상장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말함

주2)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4)

- 최근 1년간 금융관련법규 또는 거래소 규정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그 밖의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을 것

### 3. 이전상장 혜택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공시, 투자자보호 등 상장기업으로서 이미 검증을 받은 만큼,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경우와 달리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때 요건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1 공통 혜택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이전상장하는 경우 이전상장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분산 요건과 관련하여 의무공모물량 산정시 코넥스시장에서의 모집·매출분을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예비심사 후 상장 전에 공모를 통해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장신청기업의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고, 소액주주 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10% 이상 공모를 해야 합니다. (※ 상세 주식분산 요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만약 해당 기업이 코넥스 시장 상장기간 중 모집·매출 실적이 있다면 의무 공모물량 산정시 해당 모집·매출분을 산입하도록 하여 최대주주 지분율 희석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넥스시장에서의 모집·매출분을 산입한 결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후 모집·매출할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 미만인 때에는 5% 이상을 모집·매출해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2항제3호)

다음으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해당 법인에 투자하였던 주식등에 대해 일정기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청구일 기준)이 2년 미만이면 해당 투자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을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이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역시 의무보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 이전상장 혜택(공통) 】

구분	요건
주식분산 (공모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분산을 위한 공모비율 산정시 코넥스 상장기간 중 모집·매출분 산입</li> </ul>
의무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요건 충족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코넥스시장 상장기간(상장예비심사청구일 기준)이 1년 이상시, 의무보유 면제</li> <li>(2) 코넥스시장 상장기간이 1년 미만시,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코넥스 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 의무보유 면제</li> </ul> </li> </ul>

## 2 신속이전상장 및 신속합병상장의 혜택

앞의 공통 혜택 외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신속이전상장하거나 신속합병상장하는 경우 상장요건 중 일부가 완화 적용되고, 심사기간도 단축됩니다.

### 【 코스닥 상장 시 신속이전 · 신속합병상장의 혜택 】

구 분	코스닥(일반상장)	신속이전상장	신속합병상장
질적 심사	기업의 계속성	심사	면제
	경영안정성	심사	면제 <sup>주1)</sup>
	경영투명성	심사	심사
심사기간		45영업일 이내	30영업일 이내

주1)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가능

주2) 4가지 요건(①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 ②최근 1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 없을 것, ③최대주주가 벤처금융·집합투자 기구·명목회사가 아닐 것, ④경영권 관련 소송 및 경영권 분쟁 가능성 없을 것)을 모두 충족시 면제

## 4. 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는 부실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코스닥시장 건전성 저하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이전상장에 대해 투자자 보호 강화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속이전상장 또는 신속합병상장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이 일반상장 기업(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연장·적용됩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 후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대상자	일반상장	신속이전상장 신속합병상장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6개월	1년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자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자	6개월	1년 <sup>주)</sup>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제1항, 시행세칙 제20조제1항)

주) 코넥스시장에서 제3자배정 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의무보유 면제

참고로 거래소는 이전상장 기업에 대한 지정자문인의 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지정자문인이 추천한 신속이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지정자문인의 신규지정자문 계약체결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관리종목지정 : 6개월 이내, 상장폐지 : 1년 이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7조제3항, 시행세칙 제8조제5항)

## 2 이전상장 현황

코넥스시장 개설 후 '19년 9월말까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완료한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은 총 49사입니다.

이 중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을 통해 이전상장한 기업이 총 10사이며, 나머지 일반 이전상장기업 39사 중 13사는 일반 스팩합병을 통해 이전상장 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 후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1년이며, 이전상장이 처음 나타난 2014년(1.3년)에 비해 매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전상장 소요기간 추이 : 2014년(1.3년) → 2015년(1.4년) → 2016년(1.9년) → 2017년(2.0년) → 2018년(2.6년) → 2019.9월(3.2년)

###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기업 현황(2019년 9월말 기준)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계
신속이전	3	2	4	0	1	0	10
일반 이전	스팩합병	0	0	3	3	5	2
	기술특례	0	2	3	0	4	2
	일반	3	4	1	4	2	15
계	6	8	11	7	12	5	49



## 코넥스시장 상장업무 가이드

# VII

## 기타사항

1. 최초가격 결정
2. 지정자문인 제재
3.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4. 상장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 VII. 기타사항

### 1 최초가격 결정

#### 1. 최초가격 결정 과정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일 최초가격은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를 산출한 후, 신규상장일 장 개시 전 단일가매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규상장일 최초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가격의 산출 방법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의 산정기준 “(1) → (2) → (3) → (4)”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 【 상장일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

산정기준		평가가격
유형	요건	
(1) 공모	① 증권신고서 제출 or ② 3억원 이상 & 50인 이상인 소액공모 또는 크라우드펀딩 <sup>주1)</sup>	공모가격
(2) 50인 <sup>주2)</sup> 이상 사모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사모가격
(3) VC 등 <sup>주3)</sup> 투자	①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주식 발행 ② ①에 미해당시 발행증권총수의 5% 이상 주식 또는 CB · BW 발행	발행가격
(4) (1)~(3)까지 외의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
(5) (1)~(4)의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

- 주1) 소액공모 또는 크라우드펀딩의 투자금액 및 투자자 수 산정시 50만원 미만인 투자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는 제외
- 주2) 50인 산정시 실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는 제외
- 주3)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제1항제1호 · 제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제6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산출된 가격에서 원 미만은 절사하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하여 최종 평가가격을 산정합니다.

#### 【 호가가격단위 】

1주당 가격 기준	호가가격단위
1,000원 미만	1원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10원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100원

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제2항

평가가격이 산출되면 해당 평가가격에 일정 적용비율을 곱하여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을 산정합니다. 호가가격의 범위가 산정되면 신규상장일(매매개시일) 08:30~ 09:00까지 해당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 후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최초가격이 결정됩니다. 장중 당일 가격범위는 해당 최초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입니다.

####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을 위한 적용비율 】

구 분	적용비율
(1) 최저호가가격	90%
(2) 최고호가가격	평가가격을 주당순자산가치로 하는 경우
	400%
	평가가격을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경우*
• 그 외의 경우	20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별표1] 제2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정하는 경우 등 거래소가 최고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을 400%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 적용

## 2. 평가가격 산정

### ①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1년 전의 날 이후에 모집·매출(공모) 실적이 있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모집·매출(이하 '공모')이 있는 경우, 해당 모집·매출시의 가격이 평가가격이 되며, 공모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수가증평균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공모 이후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가격 회석요인을 반영·조정해 가격을 산정합니다.

상장 신청일 이후 공모가 있는 경우 상장승인일 이전에 주식대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유상증자가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의 거래소 제출이 완료되어야 평가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

평가가격 산정을 위한 공모실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및 일괄신고서를 말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이 확인되면 해당 공모가격으로 평가가격을 산정합니다.

#### ② 소액공모 및 크라우드펀딩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 및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공모가액이 3억원 이상이고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공모가액 및 투자자의 수를 산정할 때는 각각의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는 공모가액 및 투자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장 신청일 1년 전 이후 소액공모나 크라우드펀딩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 등 투자자 수 및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3억원 이상 50인 이상에 해당함을 확인받아야 평가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모 및 크라우드펀딩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내 공모실적을 합산하여 3억원 이상 50인 이상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 경우 모집은 모집끼리, 매출은 매출끼리 합산합니다.

동일인이 2회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1인으로 처리하여 투자자 수를 산정하되, 발행주식수 가중평균을 구할 때는 회차별 동일인에게 발행된 각각의 주식수로 발행주식수를 산정합니다.

한편 동일인이 2회 이상 투자하여 총 투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개별 건별로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는 공모가격, 투자자 수 및 발행주식수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 연고자

1.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2. 임원(업무집행지시자 포함), 우리사주조합원
3. 계열회사와 그 임원
4.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
5. 외국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6.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1) 발행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에게 자사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
  - 2) 발행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 3) 발행인이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언론, 학술 및 연구 등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4) 발행인이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농어민단체 등 특정지역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역의 산업 폐기물 처리, 금융·보험서비스 제공,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5) 발행인이 동창회, 종친회 등의 단체 구성원이 총의에 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6)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주주가 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로 다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받은 경우 그 주주
- 7) 위 연고자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라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 【 Q&A 】

1. 신규상장 신청 1년전 이후에 크라우드펀딩으로 3억원 자금 조달에 성공하였습니다. 투자자는 총 50명으로 당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도 동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3억원 이상 50명 이상인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여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 ☞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에 해당하므로 투자자 수 및 공모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 크라우드펀딩 실적은 3억원 이상 5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신규상장 신청 1년전 이후에 총 3회에 걸쳐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하여 각각 1억원, 1.5억원, 1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보통주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3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연고자 또는 50만원 미만 투자로 제외되는 투자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개별 건으로는 3억원 미만이지만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3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3. KSM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업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2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여 크라우드펀딩특례로 신규상장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 ☞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조건과 평가가격 인정 조건은 별개의 조건이므로 특례상장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가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1년 전의 날 이후 사모 실적이 있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사모를 의미하고, 사모 가격이 평가가격이 되며, 사모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수가증평균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모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발행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자 수 산정시 각각의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는 투자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 ① 사모 대상자

50인 이상이 투자한 경우에 인정되며, 50인 산정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각각의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는 제외합니다.

사모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투자자 수를 산정하되, 동일인은 1인으로 처리합니다.

해당조건 충족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사록, 청약 · 배정명세서 요약표 등 투자자 수 및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요 사모 대상자

- 전문투자자
  - 국가
  - 한국은행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주권상장법인
  -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금 및 기금 관리 · 운용법인, 공제사업 경영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상장 국내법인, 이에 준하는 외국인 등

-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공인된 자격증(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을 가지고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발행인의 연고자
  - 최대주주, 5% 이상 소유주주
  - 임원 및 우리사주조합원
  -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발행인이 주권의 모집 · 매출한 실적이 없는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제2항》

## ② 총 발행주식수의 5% 이상 발행

5% 이상 발행기준 판단을 위한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상장신청일 전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사모가 상장신청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상장신청일 이후 사모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분이 반영된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납입일 익일 기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를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상장승인일 이전까지 주식대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해당 사모가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의 거래소 제출이 완료되어야 평가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③ 사모가격

사모 발행가격으로 산정하며, 2회 이상 사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수가 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모 이후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가격 희석요인을 반영 · 조정해 평가가격을 산정합니다.

### 3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3년 전의 날 이후에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모 실적이 있는 경우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모에서 투자받은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하며, 2회 이상 투자받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수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① 사모 대상자

해당 조건을 적용받기 위한 사모 투자 대상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제1항제1호 · 제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6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i.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제1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ii.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제1항제2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i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6호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제3항 및 [별표3-1]

- ①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 ② 국내 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③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피탈 협회 소속 투자회사

iv.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① 국가, 한국은행
- ②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③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④ 외국 정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 ⑤ ② 및 ③에 준하는 외국인

한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받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은 동일하나 유한책임사원(LP)이 상이하다면 별도의 기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②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 사모

해당 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조건이 붙은 종류주식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조건이 붙은 종류주식은 보통주식 전환을 가정하여 반영하고 그 밖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 희석화 요인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5% 이상 사모 실적의 대상이 되는 투자는 보통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조건이 붙은 종류주식을 신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전환조건이 붙은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산정과 마찬가지로 보통주식 전환을 가정하여 반영합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는 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모 실적시기가 상장신청 전·후 중 언제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사모 시기가 상장신청일 이전인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상장신청일 이후 사모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분이 반영된 발행주식총수(납입일 익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상장승인일 이전까지 주식대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해당 사모가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이 거래소에 제출되어야 평가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③ 발행증권총수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CB·BW 사모

전문투자자 등의 투자비율이 ②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추가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합산한 비율이 발행증권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모시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증권수 및 발행증권총수는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발행조건이 붙은 종류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전환을 가정하여 산정하되, 신규상장신청일부터 1년 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증권 및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1년 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증권이라도 이미 보통주로 전환 또는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증권수 및 발행증권총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④ 발행가격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발행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의 조정이 있거나 사모 이후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가격 희석요인을 반영·조정해 평가가격을 산정합니다.

만약 사모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수가 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하며, 발행시기별(주금 납입일 익일 기준)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 【 투자시기 별 가중치 】

발행시기	가중치
신규상장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및 신청일 이후	3
신규상장 신청일 이전 1년 ~ 2년 이내	2
신규상장 신청일 이전 2년 ~ 3년 이내	1

### 【 Q&A 】

1. 상장 신청 3년 이내에 투자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가가격 및 최초가격 호가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 투자내역

- ('16. 8.20) 전문투자자 A가 보통주 100주 투자, 발행가 1,500원
- ('17. 7.15) VC B가 CB 500,000원 투자, 전환가 2,000원
- ('17.12. 2) 해외VC C가 보통주 300주 투자, 발행가 2,500원
- ('18.12.15) VC D가 RCPS 400주 투자, 전환가 3,000원
- ('19. 7. 1) 신규상장 신청

#### ◆ 상장신청일 현재 회사의 주식 및 CB · BW 기발행내역

-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9,000주
  - 종류주식 발행주식총수 1,000주(보통주로 전환 가정하여 산출)
  - ('15.12.15) CB 5백만원 발행, VC 대상 사모, 전환가 1,500원, 7년 만기
- ☞ 주식투자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100주+300주+400주=800주로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8%에 해당하므로 CB, BW 발행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투자 내역으로 평가가격을 산정합니다.

#### ◆ 평가가격

##### ① 투자시기별 가중치 반영

$$\frac{(100주 \times 1,500원 \times 1) + (300주 \times 2,500원 \times 2) + (400주 \times 3,000원 \times 3)}{(100주 \times 1) + (300주 \times 2) + (400주 \times 3)} \approx 2,763.2 \text{ 원}$$

- ❷ 원미만 절사 : 2,763원
- ❸ 평가가격(호가가격단위 절상) : 2,765원
- ❹ 호가가격범위 : 2,488.5원(90%) ~ 5,530원(200%)
- ❺ 최종 호가가격범위(원미만 절사후 호가가격단위 절상) : 2,490원 ~ 5,530원

2. 상장 신청 3년 이내에 투자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가가격 및 최초가격 호가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투자내역

- ('17.12. 2) 해외VC A가 보통주 300주 투자, 발행가 2,500원
- ('18.12.15) VC B가 CB 1천만원 투자, 전환가 5,000원, 7년 만기
- ('19. 7. 1) 신규상장 신청

◆ 상장신청일 현재 회사의 주식 및 CB · BW 기발행내역

-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0,000주
- 종류주식 및 BW는 없음
- ('13. 2. 1) CB 5백만원 발행, VC 대상 사모, 전환가 2,500원, 7년 만기
- ☞ 주식투자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문투자자등이 투자한 주식은 300주로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3%에 불과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로 CB · BW 투자를 합산한 비율이 발행증권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 발행증권총수 5% 이상 여부

- 투자 보통주수 : 300주
- 투자 CB발행증권수(보통주로 전환 가정) : 1천만원/5,000원 = 2,000주
- 발행증권총수 : 10,000주(보통주)+2,000주(당해CB) = 12,000주  
('13년 발행 CB는 만기 1년 미만이므로 발행증권총수에서 제외)
- 투자비율 : (300주+2,000주)/12,000주 = 19.2%

전문투자자등의 투자비율이 발행증권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투자가격으로 평가가격을 산정하며, 사모가 2회 이상이므로 발행증권수가중평균으로 산정하되, 투자시기별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평가가격

❶ 투자시기별 가중치 반영

$$\frac{(300주 \times 2,500원 \times 2) + (2,000주 \times 5,000원 \times 3)}{(300주 \times 2) + (2,000주 \times 3)} \approx 4,772.7원$$

- ② 원미만 절사 : 4,772원
- ③ 평가가격(호가가격단위 절상) : 4,775원
- ④ 호가가격 범위 : 4,297.5원(90%) ~ 9,550원(200%)
- ⑤ 최종 호가가격범위(원미만 절사후 호가가격단위 절상) : 4,300원~9,550원

3. VC의 투자 이후 1:2 비율로 무상증자 후 액면분할(5,000원 → 500원)을 하였습니다. 사모가액이 55,000원 이라면 평가가격은 얼마가 되나요?

☞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한 주가 하락 요인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평가가격은 무상증자를 반영하여 55,000원의 1/2인 27,500원으로 1차 조정 후 액면분할을 반영하여 27,500원의 1/10인 2,750원으로 조정됩니다.

4. VC를 대상으로 분리형 BW를 발행하여 3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발행증권총수 대비 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BW의 행사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사모실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행사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상장신청일 3년 내에 보통주, RCPS를 사모 발행하였고, 기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CB를 발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주식투자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CB나 BW 투자도 사모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식(보통주, RCPS) 투자비율이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4 주당순자산가치

❶ ~ ❸ 외의 경우에는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당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신규상장 승인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diamond \text{ 주당순자산가치} = \frac{\text{순자산가액}}{\text{신규상장 승인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①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은 신규상장 승인일 현재 거래소에 제출한 최근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비지배 지분은 제외)에 자기주식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연도 반기 경과 후 신규상장을 신청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가격으로 인정되는 순자산가액은 반기재무제표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고,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출합니다.

한편, 신규상장 승인일 현재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작성 기준일 이후부터 신규상장 승인일까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상장 승인일 이전까지 유·무상증자 등이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변동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환주(종류주식) 등과 같이 K-IFRS, K-GAAP 등 적용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순자산가액 차이는 조정하지 않으며, 신규상장 승인일 현재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작성 기준일 이후부터 신규상장 승인일까지 발생한 유·무상증자에 따른 발행비용은 자기자본 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② 발행주식총수

신규상장 승인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환주(종류주식)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상장 승인일 현재 보통주로 전환됨을 가정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다른 주식 희석화 요인은 반영하지 않으며, K-IFRS 도입 등에 따라 종류주식이 부채로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해당 종류주식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5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

주당순자산가치가 음(−)으로 산출되는 경우 등 1 ~ 4의 방법을 통해 산출한 평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및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가가격 범위는 최저 90%, 최고 400%가 적용됩니다. 다만, 1 ~ 3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정하는 경우 등 최고호가가격의 적용비율을 400%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로 합니다.

## 2 지정자문인 제재

코넥스시장에서 지정자문인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실사,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등 상장준비, 공시·신고 대리 등 상장유지, 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추천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역할이 큰 만큼 지정자문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자칫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코넥스시장은 물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까지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책임 있는 신속이전상장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자문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지정자문인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과의 신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자격제한 조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해당 조치는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 지정자문인 자격 제한 】

구 분	사 유	자격제한 기간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내	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 상장폐지	6개월 이내
	기업현황보고서 미제출	3개월 이내
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후 2년 이내	추천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6개월 이내
	추천상장법인의 상장폐지	1년 이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7조, 시행세칙 제8조』

코스닥시장 이전상장과 관련한 지정자문인 자격제한은 해당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당시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한 지정자문인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격정지 사유가 복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문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격제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코넥스시장 상장폐지 요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정자문인 자격제한 관련 상장폐지 등 사유 】

구분	사유	규정조문
코넥스 상장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li> <li>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li> <li>파산선고를 받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li> <li>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같은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감사인의 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li> <li>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li> </ul> </li> <li>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설명회 미개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한정)</li> <li>「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2반기 연속 또는 3년 내 4회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li> <l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이 있는 경우</li> </ul>	<p>「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제1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9호 (제7호 · 제10호 및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한정) · 제10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p>
코스닥 관리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 미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음</li> </ul>	

구분	사유	규정조문
코스닥 관리종목	<p>가. 우량기업부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한 기술성장기업 중 제약 · 바이오기업인 경우로서 ①연구개발 우수기업(혁신형 제약기업), ②시장평가 우수기업(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이 4천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시가총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 ③최근 3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전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④신규상장일/스팩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 중인 기업에 매출액 미달이 발생한 경우</p> <p>나. 우량기업부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한 제약 · 바이오외 기술성장 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테슬라 요건으로 신규상장한 기업)인 경우로서 신규상장일/스팩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 중에 매출액 미달이 발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이 있는 경우("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지속").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음.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함</li> <p>가. 우량기업부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한 기술성장기업인 경우로서 신규상장일/스팩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지속이 발생한 경우</p> <p>나. 이익미실현기업(테슬라 요건으로 신규상장한 기업)인 경우로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지속이 발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자배지분을 제외</li> <p>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p> </ul> </ul>	<p>「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14호의2 · 제14호의3</p>

구분	사유	규정조문
코스닥 관리종목	<p>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p> <p>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li> <li>•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함</li> </ul>	<p>「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14호의2 · 제14호의3</p>
코스닥 상장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해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li> <li>• 제28조제1항제2호(매출액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li> <li>• 제28조제1항제3호(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지속)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li> <li>• 파산선고를 받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li> <li>•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 산정시 비자배지분을 제외함).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38조제2항제5호 마목)를 거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li> <li>나. 제28조제1항제4호가목(최근 반기/사업연도말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다목(최근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또는 반기 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li> </ul> </li> </ul>	<p>「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 제2호 · 제4호 · 제4호의2 · 제5호 (해산사유가 파산 선고인 경우로 한정) · 제10호 · 제11호 및 제38조제2항 제3호</p>

구분	사유	규정조문
코스닥 상장폐지	<p>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함)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p> <p>다.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최근 반기/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또는 다목(최근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함)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p> <p>라. 제28조제1항제4호(최근 반기/사업연도말 자본잠식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또는 최근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함)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으로 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 아닐 것</li> <li>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li> </ul> </li> <li>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때.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제외</li> </ul>	<p>「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 제2호 · 제4호 · 제4호의2 · 제5호 (해산사유가 파산 선고인 경우로 한정) · 제10호 · 제11호 및 제38조제2항 제3호</p>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2항 · 제3항〉

### 3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코넥스시장은 신규상장시 별도의 심사수수료는 없으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은 거래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상장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개장 이후 현재까지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 '15.6월말까지 최초 면제한 이후 매년 1년씩 면제시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최근 '18.6월말에는 2년간 면제 연장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20.6월말까지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납부는 면제됩니다.)

만약, '20년 6월 면제시한이 종료되고 추가 면제시한 연장 조치가 없다면 코넥스시장 신규 상장신청기업 및 상장기업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3]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거래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상장시 납부하는 상장수수료는 기준시가총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연부과금은 직전 연도의 평균시가총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산출을 위한 수수료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수수료 】

시가총액 <sup>(주)</sup>	수수료율
100억원 이하	10억원당 3만원 (최저 한도액 5만원)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만5천원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8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만원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12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5천원
7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만원+7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18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천원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230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천5백원
5,000억원 초과	305만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백원

주) 상장주식수에 상장신청일 직전일 현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별표1]에 따른 평가가격을 곱하여 산정된 기준시가총액

### 【 코넥스시장 연부과금 】

시가총액 <sup>(주)</sup>	수수료율
100억원 이하	10억원당 1만원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1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천원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6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천원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천원
7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52만원+7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천원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64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천원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84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천원
5,000억원 초과	114만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백원

주) 직전 연도의 평균시가총액(매일의 시가총액을 단순산출평균하여 산정)

## 4 상장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거래소는 중소 비상장기업의 증권시장 진입을 돋고자 상장을 희망 또는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비상장기업 임직원의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상장 준비를 돋기 위해 상장제도와 절차 등 실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슈 등을 청취하고 해당 기업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거래소 홈페이지(<https://startup.krx.co.kr>) 내 컨설팅 신청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거래소가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넥스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중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지정자문인 선임 없이 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장관련 의사결정 및 실무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시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함께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자 과정과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대형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경영자과정 및 상장전문가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코넥스시장의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 중 KSM등록에 따른 완화된 상장요건을 통해 상장하려는 기업은 거래소가 개설한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2항제10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6제1항제4호나목

# VIII

## 부 록

1.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기업 현황
2.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표준양식)



## 부록1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기업 현황

연번	연도	기업명	업종	코넥스 상장일	코스닥 이전상장일	소요 기간(년)	이전상장 유형
1	'14년 (6사)	아진엑스텍	IT	2013-07-01	2014-07-24	1.1	일반상장
2		메디아나	바이오	2013-07-01	2014-10-07	1.3	일반상장
3		테라셈	IT	2013-10-11	2014-10-30	1.1	일반상장
4		랩지노믹스	바이오	2013-07-01	2014-12-16	1.5	신속이전
5		하이로닉	바이오	2013-07-01	2014-12-17	1.5	신속이전
6		아이티센	IT	2013-07-01	2014-12-23	1.5	신속이전
7	'15년 (8사)	베셀	IT	2013-07-01	2015-06-19	2.0	신속이전
8		칩스앤미디어	IT	2013-10-29	2015-08-05	1.8	일반상장
9		엑시콘	IT	2014-12-24	2015-10-22	0.8	일반상장
10		아이진	바이오	2013-11-28	2015-11-16	2.0	기술특례
11		매직마이크로	IT	2013-12-20	2015-11-19	1.9	신속이전
12		리드	IT	2014-09-26	2015-11-20	1.2	일반상장
13		엠지메드	바이오	2014-12-15	2015-11-20	0.9	기술특례
14		예스티	IT	2014-12-29	2015-12-16	1.0	일반상장
15	'16년 (11사)	닉스테크	IT	2013-11-12	2016-04-12	2.4	스팩합병
16		알엔투테크놀로지	IT	2013-12-24	2016-06-22	2.5	신속이전
17		정다운	음식료	2015-07-31	2016-06-29	0.9	스팩합병
18		바이오리더스	바이오	2014-11-26	2016-07-07	1.6	기술특례
19		옵토팩	IT	2014-10-31	2016-07-20	1.7	기술특례
20		핸디소프트	IT	2015-06-29	2016-11-24	1.4	신속이전
21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바이오	2013-07-01	2016-11-30	3.4	일반상장
22		퓨처켐	바이오	2015-08-13	2016-12-01	1.3	기술특례
23		솔트워스	IT	2015-07-08	2016-12-05	1.4	스팩합병
24		유니온커뮤니티	IT	2014-07-23	2016-12-07	2.4	신속이전
25		현성바이탈	음식료	2015-04-03	2016-12-09	1.7	신속이전

연번	연도	기업명	업종	코넥스 상장일	코스닥 이전상장일	소요 기간(년)	이전상장 유형
26	'17년 (7사)	씨아이에스	IT	2014-04-25	2017-01-20	2.7	스팩합병
27		이엘피	IT	2015-04-28	2017-04-06	1.9	일반상장
28		케이피에스	IT	2016-12-21	2017-09-06	0.7	일반상장
29		세화피앤씨	화학	2013-09-25	2017-09-19	4.0	스팩합병
30		세원	운송장비 · 부품	2015-12-29	2017-10-20	1.8	일반상장
31		비디아이	기계 · 장비	2017-01-16	2017-11-09	0.8	일반상장
32		미래자원엠엘	음식료	2015-12-24	2017-12-28	2.0	스팩합병
33	'18년 (12사)	링크제네시스	IT	2016-07-29	2018-02-05	1.6	기술특례
34		아시아종묘	농립어업	2016-12-20	2018-02-12	1.2	기술특례
35		파션플랫폼	섬유 · 의복	2016-12-20	2018-02-13	1.2	스팩합병
36		엔지켐생명과학	바이오	2013-09-25	2018-02-21	4.5	기술특례
37		오스테오닉	바이오	2016-05-04	2018-02-22	1.9	기술특례
38		오파스넷	IT	2016-12-20	2018-08-24	1.8	신속이전
39		디지캡	IT	2014-05-30	2018-09-07	4.4	일반상장
40		인산가	화학	2015-12-21	2018-09-11	2.9	스팩합병
41		지티지웰니스	유통	2015-06-17	2018-09-21	3.3	일반상장
42		케이엠제약	화학	2016-02-24	2018-09-28	2.7	스팩합병
43		본느	화학	2016-05-16	2018-10-29	2.5	스팩합병
44		나무기술	IT	2016-11-28	2018-12-11	2.1	스팩합병
46	'19.9월 (5사)	지노믹트리	바이오	2016-07-19	2019-03-27	2.7	기술특례
45		줌인터넷	IT	2016-06-10	2019-06-10	3.0	스팩합병
47		수젠텍	바이오	2016-11-11	2019-05-28	2.5	기술특례
48		포인트엔지니어링	금속	2017-08-14	2019-07-16	1.9	스팩합병
49		그린플러스	금속	2013-12-20	2019-08-07	5.6	일반상장

## 부록2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표준양식)

###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표준안)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증권 주식회사(이하 “지정자문인”이라 한다)는 회사의 코넥스시장 상장 및 상장유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함에 있어 금융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지정자문인이 회사의 코넥스시장 상장 및 상장유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회사와 지정자문인 간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장규정 등 거래소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회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이 된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는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지정자문인의 업무범위)** ① 회사가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인 경우 지정자문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회사에 대한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
  - 회사의 신규상장절차 등에 대한 조언, 자문 및 신규상장 사무처리
  - 그 밖에 상장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업무
- ② 회사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지정자문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회사의 금융관련 법규 및 거래소 규정 준수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언
  - 회사의 공시 및 신고 대리

3. 회사의 주권에 대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이행
4. 회사의 영업·재무상황 및 예측 등을 분석한 자료(기업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제시
5. 회사의 기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권고 및 지원
6. 그 밖에 상장규정,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업무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정자문인이 상장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 및 신고 대리를 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지정자문인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장규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해당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지정자문인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지정자문인은 회사의 코넥스시장 상장 추진을 위한 상장적격성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회사의 경영실적, 영업, 주요재무항목, 회계, 세무관리(이하 “경영관리실태, 재무 및 회계관리실태”라 한다) 관련 자료의 확인,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지정자문인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규, 조직도
2.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3. 반(분)기별 자금조달 및 사용실적 현황 자료
4. 반(분)기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 재무제표
5.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자료
7. 주주명부 등 주주의 주식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8. 경영관리실태, 재무 및 회계관리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자문인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④ 회사는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공시사항 발생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지정자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자문인이 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시 및 신고 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및 상장유지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등 경영상태 또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자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정자문인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본사, 사업장, 사무소 및 지점 등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관계 법규의 위반 또는 영업상의 비밀 등에 해당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회사와 지정자문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권리·의무 외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관련 법규 및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6조(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① 지정자문인은 회사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호가제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산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자문인이 회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호가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호가 스프레드비율	호가수량	대상 종목	기타
%	매매수량단위의 100배(100주) 이상이고, 호가수량에 호가가격을 곱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	보통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자문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무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수량이 상장주식수의 1%를 초과(결제일 기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 미만(결제일 기준)으로 되기 전까지 매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2.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결제일 기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매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결제일 기준)으로 되기 전까지 매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2호 및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소멸된 이후에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지정자문인은 별도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⑤ 지정자문인은 유동성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 고의로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 및 회사의 최대주주등은 회사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지정자문인은 회사의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에 제공한다.

1. 유동성공급호가의 월별 평균수량 및 평균가격

2. 유동성공급 매매거래 현황

3. 그 밖에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료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지정자문인에게 유동성공급과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자문인은 관계법규의 위반 또는 영업상의 비밀 등에 해당하여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수행인력 및 연락방법)** ① 회사와 지정자문인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업무책임자와 업무담당자를 정하여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상시 연락방법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무책임자와 업무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② 회사와 지정자문인은 공시규정 제23조에 따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자문수수료)** ① 회사는 제4조제1항의 업무에 따른 상장지원수수료로 코넥스시장 상장일 다음 날에 일금 \_\_\_\_\_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제4조제2항의 업무에 따른 상장유지지원수수료로 상장 후 매 3개월의 초일에 일금 \_\_\_\_\_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정자문인은 해지일부터의 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회사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회사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상장과 관련한 비용, 공고비용 및 기업설명회 개최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자문인의 업무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는 제2항의 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활용 비용은 별도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완전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 등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3. 회사에 상장규정상의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경우
  4. 회사가 고의로 코넥스시장 상장을 지연하거나 코넥스시장 상장폐지를 결정한 경우
  5. 지정자문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6. 그 밖에 각 당사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는 해지사실 및 그 사유를 즉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지정자문인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11조 (책임)** ①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및 지정자문인 또는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본 계약 등에 기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며, 그 문제와 관련하여 지정자문인 또는 그 임직원이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이의제기를 당하는 경우 지정자문인 또는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지정자문인 또는 그 임직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금융관련 법규 및 거래소 규정 등의 개정, 지정자문인 업무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수정 내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와 지정자문인은 서면 합의로써 본 계약을 변경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이전상장 및 공모시 지정자문인의 우선권 등) ① 회사가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또는 공모를 하는 경우 지정자문인은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우선하여 회사와 상장주선 계약 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금융관련 법규 및 거래소 규정에 의하여 지정자문인이 상장주선인 또는 대표주관회사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지정자문인의 의견서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자문인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본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회사와 지정자문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 사 : 주식회사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지정자문인 : ○○ 주식회사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 코넥스시장 상장업무 가이드

- 펴낸날 : 2019년 12월
- 펴낸곳 :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 문의처 :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 코넥스상장심사팀  
02-3774-8620~8622
- 디자인 · 인쇄 : 태성디피에이 02-2266-7213

## ※ 이용안내

- 「코넥스시장 상장업무 가이드」는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는 것으로, 동 책자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이용자의 판단 또는 정보의 오류 등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의 사전 동의의 없이 이 책자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 및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 이 책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http://www.krx.co.kr)) 및 코넥스시장 전용 홈페이지([konex.krx.co.kr](http://konex.krx.co.kr))에서 다운로드(PDF파일)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